



5·18은 헌법 저항권의 상징!

5·18 부정 망언 세력 퇴출로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읍시다.
다시는 민주주의 부정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서는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주장합니다.

moveon.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헌법전문개정안에 투표하실 있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 제정으로 5·18망언자 3인을 국회에서 퇴출시키자.”

‘국민 5명 중 3명은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
영남권에서도 절반 이상 찬성!’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서는 “5·18부정망언 자한당의원 3인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소환제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서명 사이트 : moveon.kr

민주헌정수호 ·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2019년 2월 25일(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민주헌정수호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2소회의실

개회사 | 연성수 대표, 설 훈 의원, 최경환 의원

토론회 사회 | 김종철 (연세대 법전문 교수)

발제1 |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의와 성격 (정태호 | 경희대 법전문 교수)

발제2 | 5·18부정론의 성격과 법적 대응방안 (김재윤 | 전남대 법전문 교수)

토론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김누리 | 중앙대 독문과 교수

참가 단체 토론자

결의문 발표

주최 | 설 훈 의원, 최경환 의원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 6월민주포럼, 택시운전자김사복민주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주권민주주의포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추모연대,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청년
동지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전대협동우회,
한청협전국동지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나사청동우회, 정의연대, 사)시민과 미래, 서울참교육동지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부천시민연합, 아산시민연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경기평화교육센터,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주관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2소회의실

주최 | 설 훈 의원, 최경환 의원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 6월민주포럼, 택시운전사김사복민주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이한열기념사협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주권민주주의포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추모연대,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청년동지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전국대학민주동맹문화협의회, 서울대민주동맹문화, 전대협동우회,
한청협전국동지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나사청동우회, 정의연대, 사)시민과 미래, 서울참교육동지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부천시민연합, 아산시민연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경기평화교육센터,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주관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의 힘으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망언의원을 퇴출시키고, 5.18 민주주의 정신을 드높이자.

1. 불같이 번지는 5.18역사 왜곡 모독 망언 규탄 대회

지난 2월 10일 광주에서 5.18역사 왜곡 모독 망언 규탄 성명서를 낸지 2주만에 자한당 망언의원 3인에 대한 퇴출 요구와 5.18 민주주의 정신 수호는 시시각각 진화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시민사회를 넘어 공무원 사회로 번지고 있다.

2월13일에는 대구경북38개단체 공동성명, 성남지역 20단체 연대성명, 재외동포 결의문이 발표되었고, 15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성명이, 16일에는 제주도의원 공동성명이, 19일에는 전국교육감협의회 성명서이, 20일에는 부산,마산,제주가 연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4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15명(2명 제외)은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3일 5.18 모독 규탄대회를 연 5.18 시국회의는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이후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하였다. 또한 여야의원 166명(298명의 과반수를 넘김)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공동발의하는 등 보기 드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2. 무엇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지금까지 나온 5.18 망언 규탄 관련 성명서들을 분석해 보면 그 동력은 다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공분

“이미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증명되고 확정된 5.18에 대해 아직도 “‘폭동’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한심한 정당이 국회에 남아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대구경북58개단체

"5.18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5.18 관련 시민단체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전국도지사협의회

둘째,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분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 - 김무성 한국당 의원

"5.18의 역사적 의미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역사 발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 - 자한당 신상진 의원

셋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2차 학살에 대한 공분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살'이 '망언 학살'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 - 이용섭 광주시장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5.18 관련 망언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 권영진 대구시장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 대고 있는”- 재외동포 일동

3. 5.18 부정, 모독, 망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사항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저항권을 피로써 지켜낸 인간 승리의 역사이며,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동서간 냉전구조 종식에 기여한 인류 평화의 역사이다. 숭고한 5.18 정신의 왜곡, 폄훼 행위가 재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6개항을 요구했다.

첫째, 자한당은 '5.18역사 왜곡·모독·망언 3인 국회의원 제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둘째, 망언 당사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 의원직 박탈, 지만원 구속하라

셋째, 5.18 역사 부정 왜곡 방지를 위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하라

넷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즉각 출범시켜라

다섯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훼손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라

여섯째,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주의교육 강화하라.

4. 국민이 앞장서서 5.18모독 망언자 퇴출시키고, 민주헌정 수호하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64.3%의 국민이 망언 3인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한당이 국회의원 1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위 6개 요구사항이 총선 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주권자국민이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헌정수호-5.18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공동개최한 30여개 민주화운동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5.18 망언 3인 자한당 의원 퇴출, 5.18 왜곡폄훼자 처벌, 민주헌정 수호 투쟁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5.18 망언자가 제명, 구속수사, 엄정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5.18 망언 3인 자한당 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다.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악의, 고의로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은 엄한 책임을 묻는다

하나, 5.18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하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 국민의 저항권을 분명히 한다.

2019년 2월 25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6월민주포럼, 택시운전사김사복민주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주권민주주의포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추모연대,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청년동지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전대협동우회, 한청협전국동지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나사청동우회, 정의연대, 사)시민과 미래, 서울참교육동지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동학 실천시민행동,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부천시민연합, 아산시민연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경기평화교육센터,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33개 단체 일동)

CONTENTS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1. 인사말	6
연 성 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설 훈 (국회의원)	
최 경 환 (국회의원)	
2. 발 제 문	
정 태 호 (경희대 법전문 교수)	12
김 재 윤 (전남대 법전문 교수)	24
3. 토 론 문	
황 도 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46
김 누 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49
김 종 분 (5·18구속부상자회서울시지부장)	51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3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54
김 종 기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	55
이 부 영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	57
이 은 정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총장)	59
김 재 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61
박 삼 중 (주권민주주의포럼 대표)	63
정 명 훈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공동대표)	66
4. 부 록	
부록1) 5·18 시국회의 사업 목표 및 성명서	68
부록2) 5·18 망언 규탄 관련 성명서 모음	76
부록3) 5·18 정신 신설 -헌법 전문 개정안 비교대조표	90
부록4) 5·18 망언 의원 퇴출을 위한 국민소환제 재서명운동 안내	92
부록5)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활동소개	94

민주헌정수호- 5·18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연 성 수

[2월 20일 문대통령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박경린 전 광주 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80년, 저는 박정희의 유신쿠데타를 저지하다 감옥을 거쳐 군에 끌려간 지 5년 만에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이었습니다.

누나들이 힘들게 마련해준 학자금을 들고 복학하면서 저는 한 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박정희의 탄압으로 피해를진 가족들을 추스르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자!

하지만 5·18 광주학살 사진을 받은 순간, 저는 어렵게 결정한 소박한(?) 꿈을 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악할 수가 있다니.”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니!”

전두환 신군부의 살벌한 감시망을 뚫고, 피 빛 광주 땅에서 들려오는 감동의 편린들은, 이후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법’자 담요를 벗삼아 청춘을 보낼 수 있게 한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저항운동이 아닙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을 학살할 때, 저항권을 발동하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4·19 혁명 이후 불법적 개헌으로 헌법 속에 박제화되어 있던 저항권을 살려내 국민주권의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자한당 이종명 의원),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같은당 김순례 의원) 이라 하고, 망언 자리를 깔아 준 김진태 의원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 ‘박근혜 탄핵 부당’을 주장하며 또다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낸 5·18 망언 규탄 성명서를 종합해 보면, 요구사항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망언 당사자 3인 제명과 국회의원직 박탈, 둘째, 자한당 해체 수준의 반성, 셋째, 5·18 왜곡모독 처벌법 제정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64.3%의 국민이 망언 3인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 판도를 감안할 때, 분노만으로 위 3가지 요구가 순조롭게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요구는 현실적으로 관철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세번째 요구사항인 처벌법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는 한, 본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자유권 제한이 역이용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할수록 뿌리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다중의 압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토론회는 숙의토론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갈 현실적인 지혜를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5·18 망언 규탄 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3가지 사항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공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

저는 숭고한 5·18 정신과 헌법 저항권, 그리고 민주화운동 역사 폄훼에 대한 공분이라고 봅니다. 망언세력 퇴출의 핵심 방책을 ‘5·18 정신과 저항권, 민주화운동 역사 폄훼 방지책’으로 압축시켜 놓고 볼 때, 우리는 좀더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실천가능한 방안들을 유연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18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는 5·18 당사자들이 참여한 단체와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참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5·18 망언 척결 투쟁 의지는 어느 단체보다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 속 지혜를 믿고 이번 토론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명칭을 한 호흡 길게 민주헌정수호-5·18망언세력 퇴출 토론회로 정했습니다.

< 5·18 정신과 헌법 저항권, 그리고 민주화운동 역사 폄훼 행위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전국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참고하면서, 잠시 분노를 내려놓고 열린 관점으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 공동 주최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설훈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로 바쁘신 와중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경희대 정태호 교수님, 전남대 김재운 교수님, 건국대 황도수 교수님,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연세대 김종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쟁의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5·18 단체 회원분들과 30여개 민주화운동단체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 사

국회의원 설 훈(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 훈입니다.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저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최경환 의원님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그리고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패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8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5·18 부정 망언은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된 5·18 민주항쟁을 ‘5·18 폭동’로 폄훼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망언을 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무시하고 수많은 나날을 한 맺힌 아픔과 눈물로 보내온 유족들을 모독하는 행태입니다. 나아가 4·19 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및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거대한 범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망언 3인방을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심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헌 당규를 운운하며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에게 대한 징계 결정을 유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포함으로써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국민여러분!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이 민주영령과 분노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반성과 참회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 훈



축 사

국회의원 최 경 환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5·18 역사 부정죄 처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18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왜곡과 폄훼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설 훈 의원님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민주헌정수호-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님, 김재운 전남대 법전원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해주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님,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5·18 역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로 인해 촉발됐다는 것입니다.

5·18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5·18 관련자와 광주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부정하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종 판단이 끝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역사부정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역사부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역사왜곡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가짜뉴스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진실을 부정하는 급진세력에 의해 파괴되곤 했습니다. 민주공화정을 지켜낸다는 심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5·18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폼하·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항쟁

- 이명박 정권 이래 급성장한 일베, 극우행동주의자들에 의한 호남 폼하
 - 지만원에 의해 왜곡, 조작 전파된 북한군 개입설 확산의 루트
- 박정희 개발독재의 향수에 마취된 극우 태극기부대
 - 탄핵으로 절망감에 빠진 박정희 개발독재 추종세력의 비명
 - 정권 상실로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극우 영남 권력엘리트의 영합

II. 5·18 광주민주항쟁의 법적 평가의 변화

1. 5·18 민주항쟁의 개념과 의의

□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1979년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뒤 박정희의 종신 철권통치를 위한 유신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개헌논의가 허용되는 등 민주주의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던 중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비상계엄에 의거하여 광주 일원에 계엄군이 출동하자 광주의 학생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 민주회복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의 잔인무도한 시위집압 방식에 분개하여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장시위로 발전한 무장민주항쟁으로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유혈진압으로 단기적으로는 실패로 막을 내렸으나,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막대한 동력을 제공하며 87년 민주화라는 결실이 열리는 데 결정적 기여

- 2009년 5·18 광주민주항쟁 29주년에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피해자 통계
 -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사망자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무명의 무연고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
 - * 경찰, 군의 사망자: 경찰 4명, 군인 22명

2. 광주소요사태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의 명칭과 법적 평가가 변화

□ 불순분자들의 소요사태

- 광주민주항쟁은 계엄군에 의해 유혈진압당한 이후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5공 정권에 의해 5공 정권 내내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폭동’,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에 일어난 소요사태’, ‘광주사태’ 등으로 법적·도덕적으로 매도당함¹⁾

1) 1985년 6월 7일 당시 윤성민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힌 광주항쟁 관련 검거 자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의하면 총 검거자 2천 5백22명, 훈방 1천9백6명, 군법회의 회부 6백 16명, 불기소 2백12명, 기소 4백4명으로 되어 있다.

○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가 조작, 발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서울의 학생시위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조종했다는 혐의로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김대중 사형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 선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단기적으로 실패한 5·18 광주민주항쟁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질적·양적 변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5공 존립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마침내 6월항쟁을 통한 민주화로 결실을 맺음

□ 6월항쟁 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 명명

-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
- 민주세력의 분열을 틈타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신군부의 정권연장
- 1988년 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 '민주화합추진위원회' 발족

○ 민화위 제2분과(국민화합)는 2월 13일에 5.18광주항쟁을 '광주 학생, 시민의 민주화를 노력과 투쟁의 일환'으로 평가. 이처럼 5.18을 민주항쟁, 민주화투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군의 '진압책임'이 대두되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라는 입장 취하

- 13회 국회 초 여소야대 정국구도하에서 제13대 국회에서 광주 문제의 진상과 5공 청산의 목적으로 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 특위의 명칭과 관련하여 처음엔 여당인 민정당은 '광주사태' 고집, 야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광주민주항쟁> 또는 <광주민주화투쟁> 주장

○ 여당인 민정당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안, 야당에서 반대하다가 통일민주당이 양보함에 따라 결국 민주평화당도 그 명칭에 동의²⁾

○ 1988년 6월 27일 여야 4당이 진상조사특위의 명칭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합의

○ 선임된 의원은 민주정의당 12, 평화민주당 7, 통일민주당 5, 신민주공화당 3, 무소속 1명 등 28명]

-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획득

□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신군부 핵심 세력의 단죄

- 김영삼은 3당합당 후 민자당 내 권력투쟁 끝에 대선후보가 되어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제기됨

-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

2) 명칭 채택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김영택, 5.18 광주민주항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64쪽 이하 참조.

모를 우려가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불가'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

- 1995년 7월 12.12 및 5.18 사건 핵심세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여론이 비등하고, 노태우, 전두환의 천문학적 비자금의 폭로되면서 분노한 국민여론이 견제를 수 없이 타오르면서 정치권은 마침내 1995년 12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³⁾,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⁴⁾을 제정, 시행

- 검찰은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날인 1996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를 5.18 사건의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

- 1심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사형 판결, 2심법원은 전두환에 대해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선고,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날인 1997년 12월 20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로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 사면

□ 5·18 국가기념일 지정, 피해자의 민주화 유공자 대우 등

- 김영삼 정권하인 1997년에 광주민주항쟁이 발발한 5월 18일을 국가가 기념하는 5·18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대통령령 제15369호),

- 김대중 정권하인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고,⁵⁾

- 5·18 묘지가 국립 5·18 묘지로 승격됨.⁶⁾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여 기념하여야 할 민주화운동에도 포함됨

- 87년 민주화 이후 군부 출신 아닌 대통령들은 공식석상에 모두 5·18 광주민주항쟁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⁷⁾

□ 민주화운동으로의 명칭에 대한 학계의 비판

- 정치학·사회학계의 다수학자들은 80년대 중반 이래 이른바 5·18 당시 '민중'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반란,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던 신군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3)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법률 제4266호, 1990.8.6. 제정, 1990.8.17. 시행).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법률 제6650호, 2002.1.26. 제정, 2002.7.27.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63조(국립5·18묘지의 설치 등) 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5·18 묘지를 둔다.

7) 노무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사 참조.

맞선 자위 및 민주회복을 위한 폭력적 저항임을 드러내려면 민주화‘운동’보다는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그 밖에도 5.18운동, 5.18민중항쟁 등의 호칭도 종종 사용됨

III. 5·18 광주항쟁의 헌법적 성격

이처럼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국가기구의 평가는 불순세력, 내란음모 세력의 조종을 받은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5·18민중항쟁의 진압주체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반란범, 내란사범으로, 5·18민중항쟁 참여시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망, 부상 등으로 피해를 받은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로 법적 평가가 뒤바뀐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5·18 광주민주항쟁의 헌법적 본질이 반란, 내란을 통해 정권 장악을 획책하고 마침내 정권을 장악했던 불법세력에 대한 저항권행사였다는 데 있다.

1. 저항권이란?

□ 저항권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근본이유

- 국가의 행위와 명령에 대한 저항이 허용되느냐의 문제는 저항권의 실정화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질서의 근본문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은 국가에 의한 정당한 폭력의 독점(평화공동체, 권력통일체로서의 국가)과 그에 대응하는 시민의 평화존중의무와 충돌하며, 또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 행사는 보통 폭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폭정이 들어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어
- 저항권은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긴장지대에서⁸⁾ 불법세력이 기본권실현을 위한 정법질서를 붕괴시키려 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또 그 자연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 유사개념

-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 반대의 권리의 행사, 산발적 불법에 대한 소송
 - 민주체제에서도 국가는 물론 산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체제에서 정신적 무기를 쥐고 벌이는 투쟁은 반대권, 비판권, 집회, 언론 같은 의사표현수단을 통한 반대, 항의의 표시는 기본권의 행사.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한 국가의 산발적인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저항권은 아니다.
 - 이처럼 제도화된 합법적 저항도 폭정하에서는 금지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 혁명권: 혁명은 다의적이지만⁹⁾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이 그 본질. 정권장악

8) H. Laufer, Die demokratische Ordnung, 1966, 90.

9)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반란 및 내란 등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법 96노1892)은 혁명과 쿠데타를 질서나 제도의 변경의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혁명은 현존하는 정치제도의 급격한 파괴와 새로운 기초에 바탕을 둔 신제도의 수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즉 현제도가 다른 제도로 급격하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대체된다 … 이에 대하여 쿠데타

을 위한 공격적 폭력의 사용.

○ 혁명권과 저항권의 유사점: 기존 질서에 대한 폭력의 사용. 저항과 혁명 모두 기존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법적 행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저항권은 혁명권의 진부분 집합.

○ 혁명권과 저항권의 차이점:

▷ 가치관련성의 차이. 혁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저항은 불법체력에 대항하여 정법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쟁취 내지 회복을 위한 것

▷ 법적 근거: 혁명은 법적 근거가 없으나,¹⁰⁾ 저항권은 자연법. 실정화된 저항권도 이 자연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

□ 저항권: “보장되지 아니한 권리”

- 폭정에 대항하여 하늘에 손을 뻗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창공에 불가양적·불멸적으로 박혀 있는 시민의 영원한 권리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저항권행사자의 생사를 건 투쟁

- 저항권이 “권리”로 지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행사가 이처럼 목숨을 건 모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항“권”이 소송 등의 법질서가 마련한 수단을 통하여 관철될 수 있는 보통의 권리들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절차적으로 강제로 관철될 수 있는 “보장된 권리(garantiertes Recht)”가 아니기 때문인 것.¹¹⁾ 다시 말해 저항상황은 자연상태이기 때문이다.¹²⁾

- 실패한 저항시도는 법적, 도덕적으로 매도되는 것이 숙명. 그 명예회복은 불법체력이 제거된 뒤에나 가능하며, 불법체력 몰락 이후에도 종종 역사는 그 명예회복을 외면할 수도 있어

□ 저항권은 자연법적 권리이지만 실정화되기도 해

- 저항권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버어지니아 권리장전 제3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등에서 문서화되거나 실정법적 권리로 명시되고, 1968년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에도 저항권이 추가됨

-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라고 표현하여 인간에게는 불법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우리 헌법도 불법체제에 대한 개인의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87년의 개헌과정에서 처음으로 저항권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된 바 있으나 저항권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저항권에 갈음하기로 합의.¹³⁾ 헌법전문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학계의

는 그 정부형태에 따라 권력이 1인에게서 다른 1인에게로, 또는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변화가 정부 자체에 국한되고 전체 국민에 대한 영향은 최소한도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신군부세력의 정권장악을 단순한 쿠데타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나, 신군부세력은 5.17조치 이후 권력을 확고히 장악한 후 헌법을 비롯한 주요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작업을 통하여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물론 신군부는 시대의 지배이념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10)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 법학논집』 26집 (91. 09) 47 (57-58).

11) Reinhold Zippelius, Allgemeine Staatslehre, 11. Aufl. 1991, § 19 II 2.

12) 심재우, 위의 논문, 47 (63).

통설적 입장이기 때문에 위 문구에서 저항권의 실정헌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친위쿠데타를 통해 유신헌법을 제정했지만 개인의 존엄과 가치(제8조),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원리(제1조)를 명시함으로써 시대의 지배적 이념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권보장이야말로 불법체제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는 것¹⁴⁾

→ 국민주권원리도, 불법체제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선택권을 박탈하고 불법을 행하는 위정자에게 맡겨진 국가권력을 회수하는 것 정당화

2. 폭력의 사용을 내재적으로 허용하는 저항권 행사의 요건

□ 저항권 자체가 그 개념상 정상적 상황에서는 법, 특히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는 물론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음을 함의¹⁵⁾

- 단순한 복종의 거부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반항, 사보타지, 국가기밀의 누설, 무기의 사용, 정치적 파업, 방화 등이 모두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불법세력의 수괴나 그 전위대 등에 대한 살상도 저항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저항권행사의 정당화요건: 이처럼 폭력을 수반하는 저항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행사요건이 제시되고 있음

- 목적 요건: 정법질서의 회복, 유지, 창설

- 상황 요건: 불법체제의 출현 내지 그 압박

- 보충성 요건: 합법적 수단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 비례성 요건: 저항행위에서 목적과 수단 간의 대체적인 비례성이 준수될 것. 저항행위로 타격을 받게 되는 법익에 미치는 손해가 가능한 한 최소화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항행위자는 불투명한 저항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효율적인 저항을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저항권 행사자의 판단능력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음.¹⁶⁾ 저항행위가 제3자가 아닌 불법체제의 수괴나 그 전위대나 그 주요 지지조직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저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3. 5.18 무장항쟁은 저항권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¹⁷⁾

13)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82.

14) 서독의 공산당금지판결(BVerfGE 5, 85 [376 ff.])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취한 입장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 밖에도 Willi Geiger, Gewissen, Ideologie, Widerstand, Nonkonformismus, 1966, S. 102.

15) J. Isensee, Das legalisierte Widerstandsrecht, 1969, S. 56; K. F. Betram, Das Widerstandsrechts des Grundgesetzes, S. 45; R. Dolzer, Der Widerstandsfall, in: Isensee/Kirchhof(편저),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II, 1992, § 171, Rn. 39.

16) R. Dolzer, Der Widerstandsfall, in: Isensee/Kirchhof(편저),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II, 1992, § 171, Rn. 41.

1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정태호,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저항권”, 공법연구 제28집(2000), 217 이하; 이동윤/박준식, 민주화과정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 - 5.18 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2008.03), 19 이하 참조.

여기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중요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간략하게만 정리

□ 목적요건

- 계엄군의 비인도적·폭압적 진압으로부터 민주화 일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개인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위적 행위

- 당시 투쟁의 양상과 군이 저항행위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실감할 수 있었던 극명한 불법적 현실로 인하여 비록 불법체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립한다는 저항목표가 빈번하게 그리고 정연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5.18항쟁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의 대다수는 비록 질박할지라도 이 목표를 의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법체제의 극복이라는 저항목표와 그것의 주관적 인식 내지 의욕의 요건도 충족.¹⁸⁾

□ 저항권행사의 상황요건 및 보충성요건

- 유신헌법은 그 비민주적 개정과정을 도외시하더라도 권력의 통제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제반요소를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헌법.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유신체제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독재체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 박정희 전대통령이 피살된 후 1979. 12월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는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등 헌법개정과 민주화작업을 추진. 유신체제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됨으로써 유신헌법의 불법성은 헌정의 실제에서 상당부분 희석됨

- 박대통령 살해사건을 수사를 담당한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은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의 실권 장악한 채 여론과 정국을 관망하면서 잠행

- 이미 이 단계에서 저항상황은 출현하였고 또 법치국가적 수단을 통하여 전두환 등 불법세력을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저항권행사의 보충성요건도 이미 충족.

- 보안사령관으로 현직군인신분이었던 전두환은 1980. 4. 14.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함으로써 신군부는 국가기구의 중추신경을 공식적으로 모두 장악.

- 신군부는 쿠데타의 완성을 향하여 5. 17. 임시국무회의장을 무장군인으로 둘러싸는 등 국무위원들을 외포케 하여 강압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결의를 하게 한 뒤, 1980. 5. 18. 00:0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계엄령발동요건과는 무관하게 김종필 등을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로, 김대중씨 등을 사회혼란 및 학생·노조소요 등의 조종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김영삼씨를 가택연금하는 등 기존 정치인들을 거세하는 작업을 진행.

- 이상의 정황으로 보아 1980. 5.18 운동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민주화의를 보여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불법세력에 의하여 무력화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저항상황이 존재했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세력에 대항하여 민주화과정을 지킬 의지가 없었거나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저항권행사의 보충성요건도 충족

□ 저항권행사의 비례성요건

18) Peter Schneider, Widerstandsrecht und Rechtsstaat, in: Kaufmann/Backmann(Hrsg.), 1972, 360(386)은 자유민주질서로의 직관적 지향성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광주민주항쟁은 저항의 극단적 수단, 즉 다수의 차량, 장갑차, 총기와 다이너마이트까지 동원되어 쿠데타세력에 저항한 무장투쟁. 당시의 무장투쟁은 광주시민들이 외부와 고립된 계엄군의 잔인무도한 시위진압방식에 촉발되어 군부라는 가공할 조직을 대상으로 저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당시 광주시민들이 긴박하고 위험스런 저항의 상황 속에서도 무장저항수단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 일반적으로 불법세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여 또 그 세력의 강고함에 비례하여 그만큼 더 강력한 저항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됨. 그렇다면 저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계엄군이 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군의 생명과 건강이 저항권 행사의 한계요인이 될 수 없는 것¹⁹⁾

- 계엄군이 광주의 외곽으로 일시 철수하고 시내에서 공권력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내 전역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²⁰⁾ 무장투쟁의 상황에서도 이처럼 치안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민들은 목숨을 건 무장저항의 혼란상황에서도 제3자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

- 설령 수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벌이는 무장투쟁과정에서 일부 정당화될 수 없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5.18운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폭력의 행사에서 비례성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음

- 단순한 불복종운동과 같은 소극적 저항이나 평화적 시위를 대체저항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 광주가 군부의 언론통제와 시내 진입통제를 통하여 마치 하나의 섬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고려대상이 되기 힘들. 당시 광주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폭력투쟁은 많은 관객을 확보함으로써 신군부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었음²¹⁾

□ 관련 판결의 문제점

-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반란 및 내란죄 등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²²⁾, 대법원판결(1997. 4. 17. 선고 96도3376)²³⁾은, 저항권의 재판규범성을 부인했던 독재치하에서 형성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민주화과정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한 시민들을 유혈진압한 불법세력을 단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표출되어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하여 신군부의 핵심세력에 대한 재판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임에도 독재체제 아래서 형성된 기

19) 독일법원들의 저항권관련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나찌스돌격대원에 대한 기습사건사건에 대한 1962. 11. 7. 독일연방법원 판결; 수류탄 및 탄약제조를 위한 폭약수집사건에 대한 1952. 7. 12.의 프라이부르크 주고등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G. Scheidle, Das Widerstandsrecht, 1969, S. 48 ff.

20) 이 사실에서 일부 사회학자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가능성(한상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승인투쟁과 국민주권,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1998, 57 [72 이하])을 엿보기도 한다.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주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269 (299 이하)는 당시 광주사회의 성격을 ‘절대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21) 최정운, 위의 논문, 269 (317).

22) “광주시민들이 이를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23)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존의 판례에 얽매어 5.18운동이 저항권의 행사였음을 정면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독재세력에 대한 경계의 표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킨 아쉬움도 남기고 있음.²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나찌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 속에서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한 것²⁵⁾과 뚜렷한 대조.

IV. 5·18민주항쟁의 헌정사적·정치사적 의의

1.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항쟁

□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을 저지하지 못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 광주민주항쟁을 계기로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학생과 지식인만의 운동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세력을 포괄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5공 정권의 힘과 역량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민주화운동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5공 정권의 억압을 뚫고 1987년 민주화라는 결실을 맺음²⁶⁾

- 6월항쟁은 “5월 광주의 전국화”²⁷⁾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항쟁의 모델이었고, 저항세력들의 정당성을 공유하게 만든 정체성 형성의 근원”²⁸⁾

- 전두환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반독재투쟁의 고양과 가속화에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절대적 변수”가 됨²⁹⁾

- 광주항쟁의 유형이 6월항쟁의 무혈 민주화로 이행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³⁰⁾ 2016-2017년 촛불시민 혁명을 통한 헌정의 회복에도 기여했다고 보아야.³¹⁾ 광주민주항쟁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비극적 사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권위주의 세력과 미국은 이 때 얻은 교훈 때문에 6월항쟁 당시에는 물론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 당시에도 군의 동원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2. 4.19 혁명이나 6·10 민주항쟁에 대한 5·18민주항쟁의 독자성

24)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7. 9. 25. 97헌가4 결정에서 저항권행사의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5) BVerfGE 5, 85 (376 ff.).

26) 최장집,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 그 영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 기념재단, 16;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제50권 제2호, 2007, 144; 정대화, 광주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 기념재단, 25 이하 참조.

27) 안병욱, 5·18 광주민주항쟁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 5·18 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5·18민중항쟁의 의의, 2007, 31.

28) 최장집,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16.

29) 최장집,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1989, 203; 안병욱, 위의 논문, 30.

30) 6월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의 군부 동원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는 최장집, 앞의 논문, 20-21;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311-312.

31) 추미애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 실제 정보 토대로 한 발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3500016>); 후에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하였고, 수사결과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 광주민주항쟁은 4·19 민주혁명이나 6월민주항쟁에 흡수될 수 없는 독자적 의미를 지녀

- 4·19 민주혁명, 6월민주항쟁은 모두 성공한 민주항쟁이지만 군병력이 항쟁에 참여하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동원되지는 않았음. 이에 비해 광주민주항쟁은 신군부 및 그에 의해 동원된 계엄군의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 막강한 물리력에 맞선 항쟁임

- 광주민주항쟁에서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잔인무도한 진압에 대한 무장항쟁의 과정에서 흘러야 했던 막대한 양의 피는, 군을 정치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 줌과 동시에 5공 정권, 나아가서는 군부권위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군을 권력기반이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던 군부권위주의시대의 종언을 앞당김

- 특히 1980년 광주의 희생은 군부개입의 비극적 결과를 전두환과 미국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1987년 6월항쟁이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은 민주화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닦음

- 광주민주항쟁은 이처럼 4·19민주혁명, 6월항쟁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군의 국내정치수단으로의 동원불가능성”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음

V.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빈번한 폄하시도의 배경 분석

1. 5공 정권에 의한 도덕적·법적 매도의 유산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한편으로는 계엄군에 의한 비인간적인 유혈 강경진압으로 광주시민들의 무장항쟁이 촉발되었다는 것을 은폐하였을 뿐 아니라 광주민주항쟁을 불순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몰아 이를 진압하고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이룩해 낸 것으로 분식하여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광주를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시킨 채 광주민주항쟁을 왜곡·폄하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도록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김대중, 정동년 등을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지목하여 내란죄 등으로 단죄하여 대중들에게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매도는 5공 정권 내내 지속되었음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이와 같은 법적·도덕적 매도는, 실패한 저항권 행사가 직면하게 되는 숙명이지만,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호남배제 내지 반호남주의와 결합되면서 5.18 민주항쟁이 명예를 회복한 이후에도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까지도 일부 극우인사 및 일베 이용자들에 의한 김대중 전대통령, 호남,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폄하와 허위사실 유포 기도는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음

2. 비폭력적 저항만이 정당하거나 우월한 저항수단이라는 오해

□ 비폭력 저항운동의 도덕적·법적 우월성?

- 국가기구에 의한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통한 저항보다는 비폭력저항운동,³²⁾

32) 가령 루터는, 군주가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백성이 그를 따를 의무가 있는가의 의문에 대하여 ‘누구도 법에 반하여 행동할 자격이 없으며, 사람보다는 하느님께 더 복종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

시민불복종을 더 높이 평가하거나, 폭력 내지 불법체제의 감수를 통한 외적 평화의 유지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저항권을 부정하기 때문에³³⁾ 전문에 5·18 광주민주항쟁을 언급하는 데 대한 소극적일 수 있을 것임

□ 어떤 저항의 형태가 보다 효율적인지는 복합적 요인에 달려 있어

- 적극적·폭력적 저항과 소극적·비폭력적 저항 중 어느 것이 불법체제를 허무는 데 적합할지는 복합적인 요인들(가령 국제사회의 압력의 실효성 등)에 달려 있음. 어떤 저항형태가 우월하다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오남용, 특히 무장저항의 오남용은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계해야. 오남용의 위험을 이유로 저항권 일반을 부정하거나, 폭력적 저항의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는 불법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음. 이 때문에 고래로부터 저항사상 내지 저항권이론이 발전되어 왔음³⁴⁾

3. 5·18 광주민주항쟁의 국지성과 권위주의정권의 호남배제전략

나 루터가 여기서 생각한 것은 속세를 등진 비폭력적 저항이었다. 즉 “관헌에 대하여는 폭력이 아닌 진리의 고백을 통해서만 저항하여야 한다. 관헌이 회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는 면책되니 신을 위하여 불법의 고통을 감내하라.”

33) 16, 17세기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으로 말미암은 중세 생활질서의 위기를 배경으로 고대 및 중세의 폭정론은 결정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보댕은 시민과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권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위로 군주주권을 파악함과 동시에 군주로 하여금 오로지 신법과 자연법에만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군주정과 폭정의 구별기준을 헌법적·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도덕적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폭정의 구분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은연중에 전제적 통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홉스는, 시민사회형성의 근본동기는 자기보존에 대한 희망이며 주권자의 기능은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제정치를 전통적인 경멸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저항권을 부인하고 있다. 칼빈은 지상에 대한 신의 분노의 표출인 불의한 관헌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저항권을 사실상 부인하였다. 자유의 철학자 칸트 역시 홉스처럼 혼란의 시대를 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질서와 이성의 이상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적 평화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그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은 공동체의 토대를 파괴하며, 따라서 시민은 독재적 권력에 대해서도 폭력적 저항이 아닌 펜의 힘, 비판적 논증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신교적 저항권 논리, 저항권에 대한 칸트의 윤리적 유보 등이 법실증주의와 맞물리면서 독일에 서는 오래 동안 저항권사상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34) 동양에서는 일찍이 맹자가 민본주의와 왕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폭정이나 학정을 일삼는 군주에 대한 역성혁명론을 전개하였다. 서양에서도 이미 희랍시대에 저항권사상의 싹이 트고 있었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저항권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동선과 책임을 무시하면서 지배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시민사회를 전제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통치자와 피치자 상호간, 시민상호간의 유대인 인애(philia)를 파괴하는 것이 폭정의 요소임을 제시하고 이 폭정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로써 그는 홉스의 표현처럼 혁명을 유발하는 폭군공포증(Tyrannophobia)이라는 병을 유행하게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로마시대에 키케로에 의해 계승되어 폭군살해를 뒷받침하게 된다. 중세에는 무엇보다도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폭군폐위론의 형태로 저항권이론이 발전되게 된다. 그에 따르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국민의 권리에 속한다면 옹립된 왕이 그의 권력을 폭정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폐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영미에서는 전통적인 폭정개념과 전제적 지배에 대한 전통적 평가가 유지되었다. 예를 들면 밀턴(J. Milton)은, 지배자가 폭군으로 변하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의 존엄을 박탈함으로써 “생애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난 국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할 때 그의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를 처형하여 죽이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로크는 사회계약설의 논리적 전제 위에서 정부가 계약목적에 반하여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정부는 해체되며, 따라서 계약당시 이양했던 자연권은 다시 국민의 수중으로 되돌아오고 그것은 저항권으로 전화되어 국민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서게 된다고 보았다.

□ 광주민주항쟁의 국지성, 지방성이 그 헌정사적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의 원인일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고립된 채 전개되면서 유혈참극으로 끝난 광주항쟁은 박정희 정권 이래의 산업화와 정치권력에서의 호남배제라는 구조적 문제, 호남인들의 이와 같은 소외 극복의 희망이었던 정치지도자 김대중의 존재와 연계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호남문제를 창출하는 요소가 됨³⁵⁾

5공세력에게 광주민주항쟁의 국지성은 광주항쟁의 의미를 국지화하고 호남배제를 중심으로 한 반호남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자원이 되기도 함. 광주민주항쟁은 다른 한편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기치로 내세운 민주화운동이 전국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세력에게 굳건한 지역적 토대를 제공하는 배경이 됨으로써 마침내 군부권위주의체제를 종식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됨

□ 광주민주항쟁은 그 국지성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적으로는 이처럼 보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임. 즉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 지향가치의 보편성,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그 의미와 영향 등의 면에서는 전국적 의미의 항쟁임. 사건 전개 공간의 국지성이 그 헌정사적 의미와 비중까지 국지화시킬 수는 없는 것

□ 호남이 정권의 축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광주민주항쟁은 민주화의 상징이며 원천으로 평가되지만, 호남이 정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박근혜 정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이 보여주듯 광주민주항쟁의 의미가 축소·국지화될 위험 잔존

MEMO



35) 최장집,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18 참조.

目 次

I. 들어가는 말	2. 미국의 대응방식
II.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법리의 한계	3. 소결: 규제반대론에 대한 재반론
1. 문제의 소재	IV.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의 검토 및 새로운 법률안의 제언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개념과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3. 소결	2.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의 제언
III. 역사적 사실 부인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	V. 맺는말
1. 독일의 대응방식	

I. 들어가는 말

5·18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민중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2008년 1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는 글을 게재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커다란 시각에서 본다면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란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살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¹⁾를 말한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의 부인은 독일에서 발생했던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 Denial)이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200만명의 민간인이 나치와 그 협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 부인자들은 아우슈비츠나 여타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가스실이나 소각로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홀로코스트 부인 등의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독일은 나치체제가 저지른 제노사

* 본 발제문은 김재윤,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전남대학교 연구소, 2015.8, 225-253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재승,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224쪽.

2)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이재승, 앞의 논문, 223쪽 이하 참조.

이드를 찬양·부인·경시하거나 나치체제의 찬양 등의 행위를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로 규정(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제4항)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 제130조와 같이 대중선동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형법상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통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식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27일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⁵⁾에서 보듯이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나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법률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개념 및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다음으로, 역사적 사실 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 부인의 형법적 규제반대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Ⅲ). 마지막으로,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신설을 제언하고자 한다(Ⅳ).

Ⅱ.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법리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2008년 5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대표로 한 5·18 관련 단체는 지만원씨를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검찰은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3) 독일형법 제130조(대중선동죄)의 제정배경, 내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는 Beisel, “Die Strafbarkeit der Auschwitzlüge - Zugleich ein Beitrag zur Auslegung des neuen § 130 StGB”, NJW 1995, S. 997 ff.; Bertram, “Der Rechtsstaat und seine Volksverhetzungs-Novelle”, NJW 2005, S. 1476 ff.; Hellmann/Gärtner, “Neues beim Volksverhetzungstatbestand - Europäische Vorgaben und ihre Umsetzung”, NJW 2011, S. 961 ff.; Koch, “Zur Strafbarkeit der Auschwitzlüge im Internet - BGHSt 46, 212”, JuS 2002, S. 123 ff.; Stegbauer, “Der Straftatbestand gegen die Auschwitzleugnung - eine Zwischenbilanz”, NSTz 2000, S. 281 ff. 참조.

4)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판결.

5)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은 아래 Ⅱ. 2. 참조.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피해자 신○○, 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피해자 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수원지방법원 1심,⁶⁾ 2012년 8월 서울고등법원 2심⁷⁾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무죄 판단의 법리로 사용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개념과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개념과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07조 제1항).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명예이므로 유아, 정신병자 등을 포함한 자연인이며,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적십자사, 종교단체, 유치원 등)도 객체에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민, 경기도민, 상인들, 학자들, 수사관들 등과 같은 막연한 집단표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도 예외적으로나마 그 집단표시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⁸⁾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 구성원 모두 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⁹⁾ 이러한 집단표지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집단표시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예컨대 A정당의 정당원들은 모두 빨갱이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집단구성원이 외부와 명백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단표시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 가운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평균적 판단(A정당의 정당원들 중 상당수)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A정당 정당원 모두)을 가리켜야 한다.¹⁰⁾ 대법원이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는 막연한 표시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2.8.23. 선고 2011노308 판결.

8)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188쪽.

9)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¹⁾

둘째, 집단의 구성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구성원 모두가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혐의를 받는 경우(예컨대 “모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¹²⁾ “장관 가운데 1명이 콜걸의 고객이다”¹³⁾)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 집단의 크기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전체 구성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¹⁴⁾

나.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

지만원씨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과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한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피고인의 글은 학문적 평가보다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 ②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참여자라는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③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집단 구성원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법적·학문적으로 평가가 확립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¹⁵⁾를 배척하고,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무죄 판단의 주된 논거는 ① 이 글의 목적이 5·18민주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한 데 지나지 않으며, ② 5·18민주화운동은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간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점, ③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다.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그러나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지하기 어렵다. 우선, 대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을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으로 보고 있다. 명예훼손의 법리에서 “인간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

10) 따라서 학교 교사 66명 중 37명이 소속하고 있는 ‘3·19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 하교하게 하였다’고 적시한 때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판결).

11) 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12) BGHSt 14, 48.

13) BGHSt 14, 48.

14) 김성돈, 형법각론(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185-186쪽; 이재상, 형법각론(제9판), 박영사, 2013, 186쪽.

15) 신수연, “5·18 역사 왜곡의 법적 대응 논의에 대한 제언”, 인권법평론 제11호, 2013, 100쪽.

여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사실(Tatsache)과 “적시된 표현이 개인의 주관적 입장표명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가치판단(Werturteil)의 구별은 두 개념 자체의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¹⁶⁾ 왜냐하면 개별사례에서 일정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드문 반면,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많은 적든 주관적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적시된 가치판단에서도 사실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¹⁷⁾ 이진국 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사실의 구성요소에는 감지가능성, 입증가능성, 구체성이 있으며,¹⁸⁾ 사실적 요소와 가치판적 요소가 혼합된 한계사례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하나의 표현에서 사실의 핵(Tatsachenkern)을 정확하게 추출해낸 다음, 당해 표현 가운데 그 사실의 핵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치판단의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되어야 한다.¹⁹⁾ 이러한 양자의 구별 방법을 지만원씨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지만원씨가 게재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는 부분 가운데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과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오관의 작용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의 사태와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감지가능성), 5·18 관련 사실자료를 토대로 입증이 가능하며(입증가능성), 구체성을 띄고 있으므로 사실, 특히 사실의 핵에 해당하고, “동의하며”,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이러한 사실과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의 핵 부분과 가치판단 부분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 판단되어 하는데, 게시글의 “동의”와 “심증”의 표현은 비록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내적 확신과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입증이 가능한 부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인지, 북한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는지 여부에 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적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지만원씨 게시글을 사실이 아닌 가치판단 내재 의견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5·18은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을 통해 ‘광주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참여자를 ‘폭도’에서 ‘국가유공자’로 법적·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지 10여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이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부인되기 어렵고, 그 주체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보이는 것과 달리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의도적인 언론통제와 교통 차단,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외부에 그 역사적 사실과는 상반된 유언비어가 다수 양산되었다는 점, 사건 이후 12년간 사건의 주범이 정권을 획득하여 그 역사적 사실이 묻혀 있었다는 점,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16)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에 대한 의미 있는 구별의 시도로는 이진국,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의 한계사례”,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243쪽 이하 참조.

17)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 4757 판결(이른바 ‘계명대 교수협의회 사건’) 참조.

18)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진국, 앞의 논문, 249-253쪽 참조

19) 이진국, 앞의 논문, 245-246쪽.

가지고 있다.²⁰⁾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부인과 왜곡 행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관련 개개인의 명예는 물론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피해자 특정’의 곤란에 따른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문제로 환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성립하고,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성립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²¹⁾ 이때 중요한 것은 집단표시가 집단의 개별 구성원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구성원 개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피해자 특정의 문제로 모아진다. 이러한 피해자 특정의 가능성은 표시된 집단의 크기나 규모가 작을수록 그만큼 피해자의 특징이 용이하기 때문에 표시된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반면,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피해자 특징이 곤란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야 할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집단의 구성원은 정작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집단의 구성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대전법조비리 보도사건’에서 “대전지역 검사들”이라는 집단표시가 당시 전국 1,150여명의 검사들 중 대전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31명의 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특정성을 인정한 바 있으나,²²⁾ ‘女아나운서 모욕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표시에 의해(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아나운서 295명 중) 공중파방송의 여성아나운서 154명인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²³⁾고 판시한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지만원씨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5·18민주유공자들”이 3,586명(2003년 1월 31일 기준)²⁴⁾에 달하여 이들 5·18민주유공자 개개인에 이르러서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사회에서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법리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 신수연, 앞의 논문, 101쪽.

21)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22)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최우석,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정보법 판례백선(Ⅰ), 박영사, 2006, 745쪽 이하 참조.

23)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김봉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개인귀속과정에 대한 분석-”, 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2011, 113쪽 이하 참조.

24) 5·18기념재단 홈페이지(<https://518.org/>) 참조.

3. 소결

이처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통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식은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②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 개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 ③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④ 정작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야 할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집단의 경우 피해자 특성의 곤란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서 보듯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명예훼손의 법리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향후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빌미뿐만 아니라 그 대문을 활짝 열어 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독일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역사적 사실 부인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

1. 독일의 대응방식

가.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 제정의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그 과정

나치체제 하에서 약 6백만여명의 유대인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대량학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이 극우주의자들의 주요한 선전의 주제로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나치추종자와 네오나치를 포함한 극우주의자들이 국가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부채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극우주의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또 다른 제노사이드와의 비교를 통해 역사에서 홀로코스트의 고유성을 상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우슈비츠 부인의 변형은 “유대인은 독일을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²⁵⁾

이에 독일정부는 1960년 6월 30일 구형법 제130조(계급투쟁선동)를 대중선동죄로 개정(제6차 개정 BGBI. I S. 478)하여 인종적 증오의 표현, 홀로코스트 부인을 규제하고자 하였다.²⁶⁾ 이 규정은 통일이후 증가한 극우주의적이고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선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1994년 10월 28일 도입된 범죄대처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1994 BGBI. I S. 3186)에 의해 중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라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Billigen), 부인(Leugnen), 경시(Verharmlosen)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25) Stegbauer, 앞의 논문, S. 281.

26) 이처럼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한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위스 등이 있다고 한다(이재승, 앞의 논문, 231쪽).

하는 새로운 구성요건, 즉 소위 “아우슈비츠 사기”(Auschwitzlüge) 조항이 신설되었고, 2002년 6월 26일 국제형법시행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아우슈비츠 사기 조항의 문구가 변경²⁷⁾되었다(BGBI. I S. 2254).²⁸⁾

나.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형사정책적 의미²⁹⁾

종래 독일형법 제130조는 형사정책적으로나 형사소추 실무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 1996년 이전까지 경찰의 범죄통계에서 통계조차 잡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독일의 헌법수호보고서(Verfassungsschutzberichten)에 따르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범죄가 극우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증명되거나 추정된다고 한다.³⁰⁾ 나아가 독일형법 제130조 위반 사건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형법 제130조의 구성요건이 확대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은 2000년과 2001년에 경찰의 사건처리 숫자(2000년 3,294건, 2001년 4,365건)와 사법부의 유죄판결 수(2000년 7건, 2001년 44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표 1> 참조). 이 때 소년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성인과 비교해 볼 때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극우적인 증오설로건’(rechtsradikale Hassparole)의 유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³¹⁾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이용을 통해 이러한 극우주적 선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그에 따른 범죄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1> 독일형법 제130조 범죄통계³²⁾

	사건	범죄혐의자	사건해결율	독일형법 제130조에 따른 전체 유죄판결			소년법에 따른 전체 유죄판결
				제1항	제2항	제3항	
1996	1,548	1,095	54.6%	197	16	12	79
1998	2,301	1,899	54.8%	197	21	12	76
2000	3,294	3,244	67.8%	186	32	7	87
2001	4,365	3,773	61.9%	329	85	44	181
2002	3,022	2,647	70.2%	330	94	17	184
2003	2,202	2,142	67.9%	297	49	18	122
2004	2,649	2,391	68.9%	246	47	24	116

27)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8) Miebach/Schäfer,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2/2, 2005, § 130 Rn. 11 ff.; 이재승, 앞의 논문, 234-235면.

29) 이하의 논의는 김재윤, “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법학논총 제36집 제4호, 2016.12, 326-327면.

30) Miebach/Schäfer, 앞의 책, § 130 Rn. 10.

31) Sieber, “Die Bekämpfung von Hass im Internet - Technische, rechtliche und strategische Grundlagen für ein Präventionskonzept”, ZRP 2001, S. 97.

32) Kindhäuser/Neumann/Paeffgen-Ostendorf, Nomoskommentar, Strafgesetzbuch Band 1, 3. Aufl., 2010, § 130 Rn. 6.

2005	2,812	2,363	69.8%	226	46	33	85
2006	3,096	2,527	71.3%	220	34	26	59

한편 사건해결율(Aufklärungsquote)을 고려하여 사건발생 건수와 범죄혐의자 수를 비교해 보면 많은 범행이 공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제3제국(히틀러 치하의 나치독일)에서 극단적인 대중선동이 이루어지던 때에 구독일형법 제130조는 당연히 그 적용이 배제되었다.³³⁾ 그러나 현행 독일형법 제130조는 독일의 국내정치에서 극우적 견해와 극좌파적 견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때에 비로소 현실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⁴⁾

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계급투쟁선동죄로 처벌되던 독일제국 시대(1871년~1918년)에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계급과 그 지지자, 사회민주주의자 및 노동조합원이 주를 이루었다.³⁵⁾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 6월 30일 제6차 형법개정률에 의해 독일형법 제130조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특히 반유대주의적 표현에 대한 고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³⁶⁾ 이후에는 좌파의 요청(linken Aufrufen)에 의한 형사소추가 증가되었는데, 이 경우 검찰과 개별 법원은 독일형법 제130조를 국가의 기능보호를 위해 적용하였다.³⁷⁾ 오늘날에는 다시 등장한 신나치 행위자들(이들 대부분은 젊은 독일남성임)에게 적용되고 있다.³⁸⁾

다.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보호법익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보호법익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보호법익은 나치체제 하에서 범하여진 집단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다. Fischer,³⁹⁾ Jahn,⁴⁰⁾ Ostendorf⁴¹⁾는 이러한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역사적 진실의 보호를 고려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지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의 독자적인 보호법익으로 진실(Wahrheit)을 주장하려는 자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딪쳐 지지될 수 없다. Köhler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허위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진실에 대한 도덕적 의무만을 침해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적 의무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로운 상태가 영향을 받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역사적 진실에 대한 추상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⁴²⁾

Jahn은 역사적 진실 이외에도 그 보호법익으로 생존자 내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Leutheusser-Schnarrenberger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⁴³⁾ 그러나 나치체제 하에서 박해를 받았음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은 생존자나 피해

33) Lömker, Die gefährliche Abwertung von Bevölkerungsteilen (§ 130 StGB), 1970, S. 16.

34) Kindhäuser/Neumann/Paeffgen-Ostendorf, 앞의 책, § 130 Rn. 6.

35) Lömker, 앞의 책, S. 8; RGSt 15, 116; 22, 293; 26, 63; 26, 349; 35, 96.

36) Lömker, 앞의 책, S. 56.

37) Bemann, Meinungsfreiheit und Strafrecht, 1981, S. 10.

38) Kindhäuser/Neumann/Paeffgen-Ostendorf, 앞의 책, § 130 Rn. 7.

39) Tröndle/Fischer, StGB, 49. Aufl., 1999, § 130 Rn 18.

40) Jahn, Strafrechtliche Mittel gegen Rechtsextremismus, 1998, S. 182, 185.

41) Ostendorf, "Im Streit: Die strafrechtliche Verfolgung der Auschwitzlüge", NJW 1985, S. 1065.

42) Köhler, "Zur Frage der Strafbarkeit des Leugnens von Völkermordtaten", NJW 1985, S. 2390.

43) Leutheusser-Schnarrenberger Sten. Ber. BT-12, S. 19671.

자 가족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입법자도 어떠한 새로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⁴⁴⁾ 이에 입법자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 제185조 이하에 어떠한 규정도 새롭게 추가하지 않았다.⁴⁵⁾

결국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란에 대해 독일의 다수견해는 그 보호법익으로 공공의 평온과 국가적 폭정에 의해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관련하여 개인의 존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⁴⁶⁾ 왜냐하면 이 규정의 규범목적은 일차적으로 나치체제 하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문의 제기 혹은 미화를 통해 네오나치의 사상이 용인되거나 심지어 승인되어 마치 가치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향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 삶을 방해하거나 독일의 정치적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부차적으로 나치체제 하에서 국가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해 그들의 개인적 존엄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⁴⁷⁾

라.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행위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은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 찬양, 부인, 경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찬양(Billigen)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구체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승인(Gutheißen)을 의미한다.⁴⁸⁾ 행위자가 나치체제 하에서의 불법행위를 옳다고 하거나 수용하거나, 필요한 것이었다고 표현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행위자가 독일 국민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는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경우 찬양에 해당한다.⁴⁹⁾

다음으로, 부인(Leugnen)은 나치체제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Inabredestellen)하거나, 이론(異論)을 제기(Bestreiten)하거나, 거부(Verneinen)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인의 행위에는 부분적인 부인까지 포괄한다.⁵⁰⁾ 이러한 점에서 부인은 양적인 개념인 경시와 다소 겹치는 측면이 있다. Kühl과 Beisel의 견해에 따르면 사실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⁵¹⁾ 반면에 Bubnoff는 이것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⁵²⁾ 왜냐하면 부인이란 문언은 이러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규범은 이러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우슈비츠 부인을 금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컨대 행위자가 집단학살을 원칙적으로 비난할 만한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도 홀로코스트 자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경우 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⁵³⁾ 또한, 아우슈비츠 신화(Auschwitz-Mythos)의 개념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적용자

44) BT-Dr 12/7421, S. 3.

45) BT-Dr 12/7421, S. 4.

46) Lackner/Kühl, StGB, 23. Aufl., 1999, § 130 Rn 1; S/S-Lenckner, StGB, 25. Aufl., 1997, § 130 Rn 1a; SKStGB-Rudolphi, Stand: Sept. 1998, § 130 Rn 1c; Jahn, 앞의 책, S. 180; Beisel, 앞의 논문, S. 1000.

47) Miebach/Schäfer, 앞의 책, § 130 Rn. 5; Stegbauer, 앞의 논문, S. 282, 284.

48) Lackner/Kühl, 앞의 책, § 130 Rn 8; Miebach/Schäfer, 앞의 책, § 130 Rn. 67; S/S-Lenckner, 앞의 책, § 130 Rn 18.

49) Stegbauer, 앞의 논문, S. 285.

50) S/S-Lenckner, 앞의 책, § 130 Rn 19.

51) Lackner/Kühl, 앞의 책, § 130 Rn 8; Beisel, 앞의 논문, NJW 1995, S. 1000.

52) LK-v. Bubnoff, StGB, 11. Aufl., 1994, § 130 Rn 44.

53) Miebach/Schäfer, 앞의 책, § 130 Rn. 69.

에게 신화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개별사례에서 구체적 표현내용에 대해 검토할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⁵⁴⁾

마지막으로, 경시(Verharmlosen)는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즉 전자의 의미에서 경시는 홀로코스트의 불법성, 위험성 그리고 결과에 대해 실질적 의미와 모순되게 사소화(Bagatellisieren)시켰을 때로 이해될 수 있다.⁵⁵⁾ 이때 경시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한 해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행위자가 이른바 역사가논쟁(Historikerstreit)의 범주 내에서 다른 집단학살과 홀로코스트를 비교했을 경우 이는 경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포섭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önig/Seiz의 견해에 따르면 양적인 의미에서 경시는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숫자를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⁵⁶⁾ 이때에도 제한 해석이 요구되는 데, 수백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부정확성을 그러한 표현을 한 행위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 유대인의 약 5백3천만명에서 6백만여명이라는 확인된 숫자는 양적 경시의 한계로 어렵게나마 설정될 수 있다.⁵⁷⁾

2. 미국의 대응방식

미국은 앞서 살펴본 독일과 달리 표현의 자유에 우월한 지위(preferred position)를 인정한 수정헌법 제1조의 법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이에 독일과 같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의 문제는 ‘증오표현(hate speech)’⁵⁸⁾ 즉 “인종·민족·종교·성별·연령·장애·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증오 등을 표명하는 표현”⁵⁹⁾의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증오표현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그 규제는 연방대법원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사상의 자유시장이론’(the theory of free marketplace of ideas),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 및 ‘내용근거규제’(content-based regulation)’라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⁶⁰⁾

미국에서 홀로코스트 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은 국가사회당 대 스코키 사건⁶¹⁾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⁶²⁾ 1977년 신나치 단체인

54) Stegbauer, 앞의 논문, S. 285.

55) Lackner/Kühl, 앞의 책, § 130 Rn 8; LK-v. Bubnoff, 앞의 책, § 131 Rn 23; S/S-Lenckner, 앞의 책, § 130 Rn 21; Beisel, 앞의 논문, NJW 1995, S. 999.

56) König/Seitz, “Die straf- und Regelungen de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es”, NStZ 1995, S. 3.

57) Stegbauer, 앞의 논문, S. 285.

58) hate speech의 번역과 관련하여 국내 문헌에서는 증오표현, 증오언론, 적의적 표현, 혐오표현, 혐오 발언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증오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증오표현은 단순히 ‘말’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증오범죄(hate crimes)와 구별된다. 증오범죄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한양법학 통권 제42집, 2013, 247쪽 이하 참조.

59)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제41권, 2014, 469쪽;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7, 42쪽.

60) 이들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심경수, 앞의 논문, 43-44쪽 참조. 특히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김재홍, “정보사회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사회과학 제8집, 1996, 79쪽 이하 참조.

61) Nat'l Socialist Party of Am. v. Vill. of Skokie, 432 U.S. 43(1977); Smith v. Collin, 436 U.S.

국가사회당(NSPA: National Socialist Party of America)이 유대인이 다수 거주하는 일리노이주의 스코키(Skoki) 마을⁶³⁾에서 “백인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며 철십자를 갖춘 나치 복장으로 반유대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였다. 스코키 마을은 시위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하느 청원을 주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주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스코키 마을이 유대인이 다수 거주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나치마크(Swastikas) 게양과 더불어 군복 착용 후 시위, 유대계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의 배포와 게양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스코키 마을 주민의 기대와 달리 “나치마크(Swastikas)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⁶⁴⁾며 신나치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판결이 내려진 이듬해 Wellington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의 중요성이나 사상의 자유시장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특정사상을 잘못된 사상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을 믿어 버리는 이유에 따라 옹호를 금지할 수 없다”⁶⁵⁾고 하여 이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최근 Jeremy Waldron 뉴욕대 교수는 ‘증오표현의 해악(The Harm in Hate Speech)’이라는 책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의 편견에 기초한 ‘증오표현’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⁶⁶⁾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규제반대론에 대한 재반론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해 독일은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한 반면, 미국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증오표현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증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강한 보호를 앞세워 최소 규제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오표현의 규제와 관련된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특정한 역사관과 이데올로기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② 역사나 역사관에 대한 진리논쟁은 문화적 과정이지 법적 과정이 아니므로 형법의 보호법익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③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간의 구별, 사실과 의견 간의 구별 등은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④ 말은 정서적 불쾌감을 줄뿐 해악을 야기하지 않으며, 특정한 범죄를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 ⑤ 처벌하더라도 부정자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순교자를 만들 뿐이라는 점 등이라는 증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반대론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반대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증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반대논거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증오표현과 동일선상에서

953(1978).

62) 이하 박용숙, 앞의 논문, 478-483쪽; 심경수, 앞의 논문, 46-48쪽; 이재승, 앞의 논문, 242쪽 참조.

63) 이 마을은 1974년 시점에서 약 7만 인구 중 약 4만 500명이 유대계이며, 그중 3천명이 나치의 박해를 받고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David Goldberger, “Skokie : The First Amendment Under Attack by Its Friends”, 29 MERCER L. REV 761, 1978, p.761 [박용숙, 앞의 논문, 478쪽 각주 52)에서 재인용].

64) Smith v. Collin, 436 U.S. 953(1978).

65) Harry H. Wellington, “On Freedom of Expression”, 88 YALE L J 1105, 1979, p.1132, 1135-36(박용숙, 앞의 논문, 482쪽에서 재인용).

66) 한겨레 2012년 6월 4일 기사 참조(<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6023.html>).

67) 이재승, 앞의 논문, 243-244쪽.

다루고 있으나, 홀로코스트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특정 역사관에 대한 진리논쟁의 대상도 아니므로 양자는 동일선상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다. 앞서 소개한 국가사회당 대 스코키 사건에서도 신나치 단체가 홀로코스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유대인 시위를 계획하였으므로 이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확산하거나 선동하는 증오표현에 해당할 뿐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도 인간의 존엄, 명예 등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호될 뿐이다. 즉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평등의 원리, 차별금지 등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⁶⁸⁾ 셋째, 홀로코스트 부인은 단순히 인종, 종교, 젠더, 장애 등에 대한 단순한 차별적 표현의 수준을 넘어 홀로코스트 생존자 및 그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심각한 심리적 해악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형벌의 본질은 해악에 대한 응보(응보주의)를 바탕으로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일반예방주의)과 범죄인의 교육·개선을 통한 재사회화에 있지(특별예방주의) 범죄자의 사상을 전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집총)거부를 행한 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내지 군형법 제44조 제3호 위반죄로 형사처벌하는 이유가 그의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바꾸기 위함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⁶⁹⁾

IV.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의 검토 및 새로운 법률안의 제언

1.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가.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

(1)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내용

2013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의원은 “일제의 만행과 헌정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인륜 범죄를 부인·찬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조 제1항),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2)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의 문제점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처벌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 사실과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⁰⁾ 하나는, 구성요건

68) 이재승, 앞의 논문, 245쪽.

69)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나달숙,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과 관련하여 동 처벌법안은 공연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범죄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같은 이유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⁷¹⁾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행위태양으로 부인은 찬양, 왜곡, 날조와 달리 소극적 행태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견해⁷²⁾가 있다. 그러나 부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이론을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뜻하므로 구성요건으로서의 적절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직무유기죄의 행위태양인 거부와 유기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형태이므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적극적 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규정할 필요는 없다.

나.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

(1)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민희의원은 앞서 언급한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과 달리 5·18민주화운동에 국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5·18유공자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국가유공자법안 제85조 제5항 신설, 5·18유공자법안 제70조 제4항 신설).⁷³⁾

(2)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의 문제점

그러나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①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법률 조항 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명예의 주체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할 법익이 법 적용자 개인의 명예인지, 법 적용대상 집단 전체의 명예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③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⁷⁴⁾

70) 반인류적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문제점의 지적으로는 임중호, 반인류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 5-6쪽 참조.

71) 오스트리아 나치금지법 제3조의h 인쇄물, 방송, 여타 매체에서 또는 기타 공연히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치의 제노사이드, 나치의 인도에 반한 범죄를 부인하거나 전면적으로 경시하거나 두둔하거나 정당화를 시도한 자는 제3조의g의 예(1년~10년, 중한 경우 20년)에 따라 처벌한다.

72) 임중호, 앞의 검토보고서, 7쪽.

73) 최민희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동일한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 제5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275).

74) 조의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정무위원회, 2013, 4-7쪽.

다. 안효대의원 대표발의안

(1) 안효대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내용

새누리당 소속 안효대의원은 현행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혐오죄’ 규정 신설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안 제312조 제1항).

(2) 안효대의원 대표발의안의 문제점

안효대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혐오죄의 구성요건을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죄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구성요건이 불명확성하다. 즉 제안된 혐오죄는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의 표현, 특히 “등”의 표현으로 인해 인종 및 출생지역과 같은 차원의 의미의 예로 축소 해석될 수 있으나, 외모, 거주 지역, 출신학교 등 다양한 의미로도 확대해석·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둘째, 동 조문을 명예에 관한 죄에 포함시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따르게 하고 있으나, 앞서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검토하였듯이 5.18민주화운동 부인이나 왜곡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법리 적용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서 이미 규정된 명예훼손, 모욕 이외에 “혐오”라는 주관적·감정적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죄의 신설은 외국인과 지역 차별적 혐오발언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 뿐 문제의 본질인 역사적 사실 부인의 근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라.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안

(1)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내용

2018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들은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편향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안 제8조에 따르면, ①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②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③ 문서, 도화, 그 밖에 표현물의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안의 문제점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비방·왜곡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해 처벌할 경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⁷⁵⁾ 셋째, 역사적 사실 부인죄로서의 성격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행위와 개인적 법익침해의 성격을 5·18유공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모욕·비방을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규정(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의 제언

가.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필요성

앞서 검토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형벌을 예정하고 있어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극단적인 이견을 표출하였다 고 해서 이를 형벌로 금지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며, 국가가 개인에 대한 사상적 후견의 시도로 사상적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따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나 도서의 출판에 대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⁷⁶⁾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인권 유린의 잔인한 역사에 대해 극단적인 의견, 즉 찬동을 하거나 행위를 미화시키는 표현은 민사상의 손해 배상 등의 법리로 풀어야지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⁷⁷⁾라든지, “역사의 부정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규제법은 많으며, 역사부정을 포함하여 역사논쟁을 법원에 맡기려는 시도는 국가에게 상대의 뇌를 검열하게 하고, 급기야 자신의 뇌를 검증받으려는 것이다. 사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다 좋은 사상으로 맞서는 것이 원칙이다”⁷⁸⁾라고 하여 민·형사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정 부분 경청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치안방해(sedition), 음란(obscenity), 명예훼손(defamation), 공격적 언

75) 정연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8.11, 6면.

76) 이재승, 앞의 논문, 240쪽.

77) 김희정, 앞의 논문, 101쪽.

78) 이재승, 앞의 논문, 247, 249쪽.

동(fighting words)에 해당하는 표현은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⁷⁹⁾ 그리고 미국은 독일이나 유럽과 같이 나치체제나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미국에서 문제된 국가사회당 대 스코키 사건⁸⁰⁾은 홀로코스트 부인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 아니라 나치의 상징인 철 십자를 간춘 나치 정복을 입고 행진을 하고자 한 신나치 단체의 시위금지에 대한 합헌 여부를 다룬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 내용 가운데 재심을 담당한 주법원은 나치마크 게양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 해당 기호가 유대인의 생활공간에 의도적으로 게양된 경우에는 폭력적인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인종이나 종교적 증오의 모멸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⁸¹⁾ 둘째, 인권 유린의 잔인한 역사에 대해 민사적 규제 방식은 그 제재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 이는 미국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적 규제가 아닌 민사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주장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명예 관점,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등 민사소송절차가 다르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민사제재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⁸²⁾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셋째, 역사부정을 처벌하는 규제법이 많다고 하나, 현재까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형사처벌(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하는 독자적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역사논쟁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니며,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은 역사논쟁의 차원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구체적 방안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 여부를 염두에 두면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벌대상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의 부인행위에 5·18민주화운동만을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인륜 범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상의 민주화운동,⁸³⁾ 증오표현 등까지 포

79) 이재승, 앞의 논문, 240쪽.

80)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51 Ill. App. 3d 279, 281 (App. Ct. 1977).

81)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51 Ill. App. 3d 279, 287-94 (App. Ct. 1977).

82)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2013, 17쪽.

8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은 반인륜적 범죄와 민주화 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동 대표발의안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언급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⁸⁴⁾ 또한, 민주화운동에 포함된 2·28대구민주화운동,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등에서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과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하고 이들 민주화운동을 부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지역적 편견을 심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킨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증오표현은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독일형법은 증오표현과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동일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조문을 달리하여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형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은 증오표현을, 동조 제3항과 제4항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증오표현을 형사처벌해야 하는가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구별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⁸⁵⁾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대상은 5·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처벌행위와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은 찬양·부인·경시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라는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찬양하거나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홀로코스트의 불법성, 위험성, 결과에 대해 실질적 의미와 모순되게 경시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에 저항하면서 펼쳐진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거나(왜곡),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날조)를 행위태양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행위방법과 관련하여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은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신문, 잡지, TV 등 언론매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지므로 이러한 행위방법에 한정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형벌과 관련하여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그 행위방법도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⁸⁶⁾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인다.

다섯째, 역사적 사실 부인죄로서의 성격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행위와 개인적 법익침해의 성격을 5·18유공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모욕·비방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할

84) 같은 지적으로 임중호, 앞의 검토보고서, 5-6쪽.

85) 증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제72호, 2014, 65쪽 이하 참조.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요가 있다. 5·18유공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 처벌이 공백이 생겨왔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해 현행 집단표시에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을 막기 위하여 그 행위객체를 분명히 하고, 모욕 이외에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포함하는 한편, 현행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제312조 제1항(친고죄)을 참작하여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정형은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특별법 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309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마련될 경우 자칫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파적 견해가 단죄되는 폐해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신설을 통해 우파적 견해를 처벌하는 폐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독일형법 제130조 제6항⁸⁷⁾과 유사하게 “5·18민주화운동의 부인·왜곡·날조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만들어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형법과 특별법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안효대의원 대표발의안과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처럼 하나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과 달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5·18유공자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5·18유공자법 제8장 벌칙에 제70조의2 제70조의3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입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7) 독일형법 제130조 제6항은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독일형법 제8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홀로코스트 부인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5·18유공자법 제8장 벌칙

제70조의2(벌칙) ① 신문, 잡지, 방송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의3(위법성조각사유)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V. 맺는 말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5·18이 ‘민중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런데도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라는 보수적 가치를 내세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심지어 기본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왜곡하는 일들이 최근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만원씨가 2008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라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의 글을 올린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만원 사건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나와도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의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이 바뀔다고 역사적 사실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형법적 규제 방안으로 5·18유공자법 제8장 벌칙에 제70조의2(벌칙)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제70조의3(위법성조각사유)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와 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신설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좌파적 견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파적 견해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에 의해 철저히 통제됨으로서 헌법상의 사상의 자

유,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진지하게 고려할 일말의 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에 대한 우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여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보충장치를 만들어 둌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5·18민주화운동, 집합적 명예훼손, 대중선동죄, 홀로코스트부인, 아우슈비츠사기

MEMO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성돈, 형법각론(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나달숙,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이재상, 형법각론(제9판), 박영사, 2013.
Jahn, Strafrechtliche Mittel gegen Rechtsextremismus, 1998.
Lackner/Kühl, StGB, 23. Aufl., 1999.
LK-v. Bubnoff, StGB, 11. Aufl., 1994.
Miebach/Schäfer,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2/2, 2005.
SKStGB-Rudolphi, Stand: Sept. 1998.
S/S-Lenckner, StGB, 25. Aufl., 1997.
Tröndle/Fischer, StGB, 49. Aufl., 1999.

<논문>

- 김재홍, “정보사회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사회과학 제8집, 1996.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제41권, 2014.
신수연, “5·18 역사 왜곡의 법적 대응 논의에 대한 제언”, 인권법평론 제11호, 2013.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7.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한양법학 통권 제42집, 2013.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제72호, 2014.
이재승,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이진국,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의 한계사례”,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조 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2013.
최우석,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서 심사기준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정보법 판례백선(I), 박영사, 2006.
Beisel, “Die Strafbarkeit der Auschwitzlüge - Zugleich ein Beitrag zur Auslegung des neuen § 130 StGB”, NJW 1995, S. 997 ff.
Bertram, “Der Rechtsstaat und seine Volksverhetzungs-Novelle”, NJW 2005, S. 1476 ff.
David Goldberger, “Skokie : The First Amendmen tUnder Attack by Its Friends”, 29 MERCER L. REV 761, 1978.
Hellmann/Gärtner, “Neues beim Volksverhetzungstatbestand - Europäische Vorgaben und ihre Umsetzung”, NJW 2011, S. 961 ff.
Koch, “Zur Strafbarkeit der Auschwitzlüge im Internet - BGHSt 46, 212”, JuS 2002, S. 123 ff.
Köhler, “Zur Frage der Strafbarkeit des Leugnens von Völkermordtaten”, NJW 1985, S. 2389 ff.
König/Seitz, “Die straf- und Regelungen de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es”, NSTz 1995, S. 1 ff..
Ostenforf, “Im Streit: Die strafrechtliche Verfolgung der Auschwitzlüge”, NJW 1985, S. 1062 ff.
Stegbauer, “Der Straftatbestand gegen die Auschwitzleugnung - eine Zwischenbilanz”, NSTz 2000, S. 281 ff.
Harry H. Wellington, “On Freedom of Expression”, 88 YALE L J 1105, 1979.

<기타 자료>

- 임중호, 반인류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
조의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정무위원회, 2013.
정연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8.
5·18기념재단 홈페이지(<https://518.org/>).
한겨레 2012년 6월 4일 기사(<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6023.html>).

1.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당성을 저항권 행사의 관점에서 정리해 주신 정태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폄훼발언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주신 김재운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 이 자리에서의 쟁점(이하, ‘오늘 쟁점’이라고 합니다)은 최근 일부 국민들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과 평가에 대하여 현행 법률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교수님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 등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우리과 우리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임이 법적 충분히 천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토론도 물론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태호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할 내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쟁점에 대한 저의 토론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응되는 현행 책임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재운 교수님의 발제는 ‘형사처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점을 넓혀서 책임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대안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오늘의 토론 깊이를 더해볼까 합니다.

3.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제도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공법적 책임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책임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도, 형사책임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제도, 공법적 책임으로는 공무원징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이 책임제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바람직한 책임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먼저 민사책임을 살펴봅니다.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은 민법에 의거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사책임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수님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의 또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자가 배상하는 금액과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자가 배상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 배상하면 되고 그 이상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뻔뻔스럽고 나쁜 놈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손해액이 사정에 따라 10배, 100배로 증대될 것입니다.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 폄훼발언을 함부로 자행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단지 오늘 쟁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고의’로 악행을 저지르는 후안무치의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줄임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5. 다음 공법적 책임을 살펴봅니다. 공법적 책임의 주된 쟁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입니다.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공법적 책임을 특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쟁점에 특히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발언을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헌법 제7조). 위법행위를 행한 공무원책임제도가 징계제도입니다. 실제로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국회는 국회의원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징계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징계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접민주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징계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권자 국민은 ‘먼발치 불구경’하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민주제’적인 징계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징계제도를 모두 직접민주제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일상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특히 중요한 공무원들, 국회의원, 판사 기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제’적 징계제도로서의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이 직접 발의하여 투표를 통하여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그 직에서 내쫓아 버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그 본질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지역에서 선출되므로 자칫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이익을 우선하는 정치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그러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도는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될 경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소환을 발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책임한 발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쟁점은 충분히 국민소환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음 형사책임을 살펴봅니다. 현행법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 폄훼발언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의율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김교수님은 이에 더해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라는 특별한 죄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고의적, 악의적 폄훼발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누구나 싫어하는 국가공권력행사입니다. 특히 ‘말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받는 것은 특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향유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여러 기본권 중 특별한 기본권입니다. 인간이 과거의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 개선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유럽 역사를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유대교에 대하여 기독교는 이단이었고, 500년 전 구교에 대하여 신교는 이단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판단이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장 듣기 싫은 이야기 이더라도 그것을 듣겠다는 열린 마음을 서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반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오늘날 우리사회의 평가가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이 아니라 ‘말’로 하는 비판, 비난, 힐난 등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듣기 싫고 역겹더라도, 민사책임, 공법적 책임을 넘어서 형사책임을 부과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늘 변전합니다. 여당야당이 항상 바뀌듯이,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도입될 경우, 세상이 바뀌어 보수정권이 들어선 뒤, 진보적 사상이 하는 말에 대하여 ‘처벌’하려고 할 때,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조항은 좋은 핑계거리가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싸움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데, 결코 바람직한 미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교수님도 비슷한 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마련될 경우 자칫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파적 견해가 단죄되는 폐해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신설을 통해 우파적 견해를 처벌하는 폐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6.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 형사처벌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사제도의 개선이나, 공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쟁점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에 대한 김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MO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과거청산의 부재이다. 임정 이후 지난 100년간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한번도 이루지 못한 한국 현대사가 5·18망언을 낳은 심층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5·18망언의 역사적 근원을 더듬어보기 위해 최근 필자가 쓴 칼럼 <대한민국 100년, 청산 없는 역사>을 인용해본다.

“대한민국이 거쳐 온 지난 세기는 실로 참혹한 시대였다. 근대사의 온갖 모순과 갈등을 우리 처럼 첨예하게 겪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식민지배, 냉전과 분단, 전쟁과 군사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는 그대로 제국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 근대의 모든 이념이 서로 부딪히고 뒤엉킨 역사의 현상이었다.

지난 백년의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은 가혹한 역사가 빚어낸 수많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제대로 청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처럼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또 있을까? 일제 고등계 형사가 해방 이후에도 독립투사를 심문하는 나라, 일본군 장교가 해방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딸까지 대통령으로 삼는 나라, 파시스트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애국가’라고 부르는 나라 -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친일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보면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가 민족주의자를 제압한 ‘반민특위’ 무장해제가 역사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문제는 친일의 과거만이 아니다. 양민학살의 과거, 군사독재의 과거, 사법살인의 과거, 고문범죄의 과거, 어용학문의 과거 - 무엇 하나 제대로 청산된 적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노덕술, 송요찬, 박정희, 양승태, 이근안, 갈봉근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감돌고 있는 미묘한 악취의 진원이다. 특히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신문을 펼쳐보라.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간첩조작 사건, 5·18망언 등은 모두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서 발산되는 일상화된 악취다.

과거청산은 사회개혁의 전제조건이다. 과거청산 없이는 사회개혁도 없다. 독일의 경우를 보라. 독일의 68혁명은 ‘과거청산 혁명’이었고, 이를 통해 독일은 ‘과거청산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것이 70년대 전면적인 사회개혁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 촛불혁명의 열기가 이리도 쉬이 사그라진 이유는 독일과는 달리 정치혁명이 과거청산 혁명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은 또한 국가발전의 동력이기도 하다. 독일은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도덕적 권위를 회복했고, 국내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구현했다. 이것이 국가발전의 발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과거청산의 부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는 냉소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사회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무력감과 패배주의의 뿌리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닿아 있다.

새로운 100년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뿔어내는 ‘백년 동안의 악취’를 걷어내는 일이다. 더 이상 과거청산을 유예할 수 없다.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국회, 학교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과거에 대한 단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냉철한 평가 작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를 둘러싼 투쟁은 미래를 향한 투쟁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한국 민주개혁 세력의 거듭된 실패는 바로 ‘과거 투쟁’, ‘역사 전쟁’을 방기한 데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신문, 2019. 2. 11)

둘째는 체계적인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부재이다. 5·18만연은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라는 의미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시되는 영역이다. 비판교육, 반권위주의 교육, 저항권 교육, 선동가 판별 교육 등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로서 독일은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주변국으로부터 ‘역사민족 Geschichtsnation’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 체계적인 정치교육이 실행되어야 하고,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정치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차제에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을 모델로 한 ‘국립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대한 만큼이나 취약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부재에 기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독일 정치교육의 인상적인 사례로서 ‘저항권 교육’에 대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교육부 규정을 소개한다. “수용할 수 없는 지배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능력, 저항기술에 대한 지식, 개혁적 혹은 혁명적 성격의 기획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자유로이 당당하게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토론문3 | 5·18민주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김 중 분 | 5·18구속부상자회서울시지부장

5·18민중항쟁이 헌정유린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995년 당시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은 오월항쟁을 5·18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5·18민주유공자로 선정하였으며 광주 망월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였다. 또 전두환 노태우를 반란 및 내란수괴죄로 구속하였다.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2011년에는 5·18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보수진영의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일베, 보수언론, 보수주의적 학계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지만원의 거짓뉴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망언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수면아래에 숨어있던 보수진영의 역사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항의농성과 집회는 꾸준히 열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5.18 역사 바로 알리기>에 한계가 있다.

농성과 집회는 그대로 하면서 국민 속으로 외연을 확장해 5·18 정신 사수 전국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우리 5·18단체는 지만원의 거짓뉴스 고발, 자한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망언규탄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거짓뉴스로 광주정신을 말살한 지만원을 구속하라

하나, 자한당은 5·18역사를 왜곡한 이종명뿐만 아니라 김진태 김순례 등 망언 5인을 제명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조속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가동시켜라.

하나,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도록 개헌을 하라.

하나,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5.18 망언 규탄 투쟁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5월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와 농성을 한 축으로 하면서 <5·18역사 바로 알리기> 등 5.18 정신의 대중적 확산방법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위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농성이 장기화될 것을 자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5월 단체들은 당분간 농성 투쟁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18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단체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 사항)

하나, 5·18을 알리는 사진집 발간 배포

한, 5.18을 사진으로 파노라마영상 제작, 배포

하나, 항쟁 장면을 짤방 제작 유튜브에 올리기

하나, 5·18체험 교육, 5·18 항쟁지 탐방

하나, 5·18관련 사진, 책 거리 전시회 등

MEMO



토론문4 |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망언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18년 독재자 박정희가 쓰러진 후 잠시 움트던 서울의 봄은 또다른 군부 전두환의 군홃발에 짓밟혔다. 계엄령과 탱크와 총칼 아래 온 나라가 숨죽이던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고립된 채 이웃의 목숨과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민주주의 제단에 피를 뿌렸다. 그들의 주검은 망월동묘지와 알지 못하는 곳에 매장되었으나, 자기 국민과 전쟁을 벌인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학살의 진실들은 교회와 성당과 대학가를 통해 온 나라로 퍼져 나갔다. 80년대 대학생들은 자기 국민을 죽인 자가 대통령인 조국이 부끄러웠고, 시민을 학살해 놓고 도리어 폭동이라고 누명 씌우며 진실을 가리는 민정당과 방송,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 분노하여 맞서 싸웠다. 그들은 모두 박종철이었고 이한열이었다. 최루탄과 곤봉을 맞고, 고문 받고 감옥에 가면서 독재와 싸우다 때론 목숨을 잃었다. 80년 광주의 시민들처럼...

결국 87년 6월항쟁으로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직선제 헌법을 쟁취하였다.

이처럼 광주항쟁은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민중들의 경건한 항쟁이었으므로, 박정희를 대체한 또 다른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첫 번째 싸움이자 그 독재를 끝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6월항쟁의 씨앗이었다.

6월항쟁 이후 광주청문회를 통해 광주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단죄받으면서, 폭동이니 사태니 하는 표현들이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88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중 하나인 민주정의당이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 자유한국당의 또다른 뿌리인 통일민주당 또한 군부정권에 의해 탄압받던 야당이었고, 광주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앞장섰던 세력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들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하고, 5.18 유공자들은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망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명명했던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운 계기가 된 광주항쟁을 모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면서 이들은 일부 사과를 하였으나 여전히 변명과 함께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 중 1명의 의원만 제명한 채 김진태, 김순례 징계를 유예하여 당 내부 선거에서 활약할 수 있게 비호하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5.18 진상규명위’ 구성에도 미적거리다 부적격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 재추천하면서 진상규명활동까지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세 번째 민주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여전히 ‘폭동’, ‘폭도’로 불리우는 억울함에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광주의 영령들 앞에 크나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망언과 폭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항쟁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 책임자의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의 원흉들인 5공 군부세력에 맞서 싸우다가 쓰러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을 기리는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열사의 뜻과 국민의 공분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국회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명의 국회의원을 제명하여 국민의 대표임을 보여라.
2. 경찰은 5. 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반시대, 반국가적 사범 지만원을 즉각 구속하고, 법원은 지만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처벌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확실히 단죄하라.

2019년 2월 22일

박종철 기념사업회

토론문5 | 5·18의 부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세 국회의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사실왜곡과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발언과 행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우리 헌정 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6월항쟁의 결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현재의 국가체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5·18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자리매김은 6월항쟁의 핵심 내용이자 뿌리였다. 따라서 5·18에 대한 부정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부정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한 이한열열사의 정신을 계승·기념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한열열사는 6월항쟁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산화하였고, 6월항쟁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삶과 죽음은 5·18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열사에게 6월항쟁은 곧 미완의 5·18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세 의원의 망언과 왜곡이 열사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국회는, 5·18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세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2.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세 국회의원의 망언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라.
3. 국회는, 이러한 왜곡과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라.

2019년 2월 18일

이한열기념사업회

토론문6 |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에 책임을 지고 5·18 망언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김 종 기 |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 600 명이 벌인 게릴라전쟁”이라며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 나아가 “전두환은 영웅”이라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말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억압한 전두환 정권과 군부의 악행을 거짓으로 가리고 두둔하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미 밝혔으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은 수차례 사법부로부터 유죄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의 또다시 당시 광주 시민을 북한 고정간첩이나 스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이종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던 것을 밝혀내야 한다”거나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망언이 이어졌다.

5·18 진상규명법 제정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정을 위한 여야합의를 늦추고 끝내 조사 항목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추가시키더니 김진태는 이번 공청회 개최와 망언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는 자기모순과 같은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민을 모독하며 우롱하는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수습은커녕 “역사적인 일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며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 이제는 “당내 소수 의견”이라느니 “보수정당 안에 여러 스펙트럼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당과 개별 의원들의 견해차로 선을 그으려 하고 “우리 당의 문제이니 다른 당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79 년의 부마민주항쟁과 80 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다르지 않다.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이들과 무참히 진압된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하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함께 연대하여 그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상규명은 전두환 정권과 군부가

저지른 헬기 기총소사와 성폭행, 인권유린 의혹과 같은 참담한 진실들이다. 이러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의 잘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자발적으로 들불과 같이 일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편협하려는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국회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강력히 징계하라.
- 사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만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9. 2. 11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MEMO



토론문7 | 5·18 망언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선언을 환영하며, 시민사회에 드리는 제안

이 부 영 |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

2월 8일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 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을 기려야 할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역사적인 날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극우세력의 망발은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응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보면 5·18망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듯하여 우려스럽다. 마치 상승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후폭풍을 맞았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뗏가를 툭툭히 지불한 것처럼, 망언 3인방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이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뉴앙스를 풍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불과 몇 년 전 역사학계의 저항과 압도적인 여론을 묵살하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던 집권 여당이였다. 쇠고기 파동과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양심적인 시국선언과 계기 수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과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참교육에 빨간색을 덧씌워 전교조를 법외노조 내몰던 집권세력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때마침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회의 성명은 교육계의 시의적절한 대응의 목소리였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5·18망언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실천 결의를 발표했다.

1.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강화한다.
2. 전국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3.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교육계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현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실천 활동이 뒤따르길 기대하면서, 차제에 몇 년 전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운동을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70년대 독일에서 진보 정치 학자와 보수 정치학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사회적 협약으로 성공한 정치교육 지침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한다.

첫째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 교육을 금지하며,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셋째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보이텔스바흐 협약 Beutelsbacher Konsens

* 요약: 독일 통일 이전인 1976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일종의 수업지침. 학교에서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서 균형 잡힌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독일 통일 후에는 그 대상이 독일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1976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에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 교육학자들이 모여 만든 교육지침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육의 최소 조건을 정한 내용으로, 처음에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교육지침에서는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첫째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 교육을 금지하며,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셋째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원칙의 골자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학생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진보적인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학생들도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둘째 원칙 역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도 사회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으므로 정보를 가능한 모으고 분석하여 자신 만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른다는 원칙은 학생들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 학생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거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상에서 말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운동을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하여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토론문8 | 국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이 은 정 |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총장

지난 2월 8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5·18 공청회'는 사법부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힌 지만원을 국회로 불러들여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군이 촉발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게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5·18 국가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모독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이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 부마민주화항쟁 → 5·18민주화운동 →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며 이러한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부정한다면 이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용을 허용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망각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

이들을 지금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망언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는 전두환과 그의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민간인인 시민과 학생, 부녀자들이 살해당하고, 폭행당했다. 정부공식 집계에서도 그 피해자가 7,000명이 넘는다. 아직도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그때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1980년 광주의 실상과 진실을 밝히려고 분신, 투신을 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증언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투옥 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들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85년 형법 제130조 3항 규정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도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형태로 나치 학살 부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가 반인륜 범죄라는 점도 나치 범죄 옹호를 단호히 처벌하는 이유다.

우리도 독일처럼 형법에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5·18 특별법에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반인륜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여 크나큰 상처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국회의원에 대한 엄중한 단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망언이 나온 사회적 분위기다.

이들 망언을 한 의원들은 그들 스스로도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반성 없이 망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도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장외에서 떠돌던 '태극기부대'가 자유한국당에서 내부 세력화를 시도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태극기 부대에서 8,000명 이상이 새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토요일 시청이나 광화문에 가면 만나게 되는 태극기부대의 많은 수는 노인들이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희망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노인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소외감, 절망, 불만을 태극기부대라는 탈출구를 통해 토로하는 것일 수 있다.

극우보수도 국민이다. 그들이 생긴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 국회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둘, 희생자와 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홀로코스트 부인을 방지하는 한국형 특별법을 제정하라!

MEMO



토론문9 | 5·18 망언자 퇴출 및 처벌을 위한 제언

김 재 용 | 변호사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I. 들어가는 말

1)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을 주제로 발제한 정태호 교수님과 <5·18 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재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 두 발제문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2) 이를 기초로 본 토론자는, ‘저항권 행사로 인정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하는 반민주 반역사 세력에 대한 퇴출 및 처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국민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헌법 전문에 저항권 행사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들어가고’, 나아가 ‘헌법 제1조에 제3항으로 저항권 행사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하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헌법개정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 요원한 지금,

우선, 이번 5·18 망언자 퇴출 및 처벌을 위한 전 국민적 규탄을 계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연대하여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여,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등 5·18. 망언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본 토론자는, 각 지역별로 ‘5·18. 망언자 등 반민주 반역사 세력 퇴출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을 조직하여 향후 전 국민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공유’는 물론 나아가 ‘친일 반민주 반민족 세력 청산’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II. <5·18. 망언자 등 반민주 반역사 세력 퇴출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운동> 조직 방안

1) 먼저, 김재운 교수님이 제안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죄’의 경우, 현재 국회의 구성 현실에서는 단기간에 법률로서 성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보세력이 다수를 차지해야만 현실적으로 법률로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전국 각 지역에 <‘5·18. 망언자 등 반민주 반역사 세력 퇴출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을 제안하여 각 지역별 조직을 구성 하고, 각 지역별로 기자회견, 토론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조직하는 것이며,

향후 이를 전국단위로 규합하여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 개정안’을 마련하고, ‘5·18 등 역사적사실 부정 처벌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위 <5·18. 망언자 등 반민주 반역사 세력 퇴출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조직은,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가령 인천의 경우,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행동하는 양심,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역사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단체들이 먼저 연대하여 시작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민주당 등 정당 및 교육청, 시청 등 지자체단체와 연대 협조하에 5·18. 진상 알리기, 전시회,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서를 보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 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5·18을 비롯하여 제주 4.3, 대구 2.28민 주운동, 4.19 민주혁명,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에 대해 교육이 이루 지도록 한다고 하는데, 무척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같은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을 통해 우리 한국현대사에 대해 올바른 시각이 세 워지면 태극기 부대와 자유한국당 일부 극우세력은 고립될 수 밖에 없으며, 나 아가 가짜뉴스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분열세력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III. 맺는 말

1)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신군부 범죄집단에 대한 광 주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2) 그럼에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반민주 반역 사 세력은 5·18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전국민적 으로 합의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마저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이는 지난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질서에 대 한 도전이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론을 분 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4) 이를 위해 시급히 <5·18. 망언자 등 반민주 반역사 세력 퇴출을 위한 역사바로 세우기운동> 조직을 각 지역별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5.18운동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격류 속에서 상반된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5.18운동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 법리적 배경을 저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5.18운동이 과연 저항권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당시 운동상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한다.

5.18운동이 무장투쟁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이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예찬하면서도 정작 그 운동의 구체적 국면들을 추적하고 저항권행사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일일이 검토하는 시도는 거의 없으며, 또 최근의 관련 판례에서도 5.18운동의 진압세력인 신군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 내란행위가 성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 해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저항권 자체에 대한 논증보다는 5.18운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기존의 저항권론이 개발한 저항권행사의 개별요건들에 그 결과를 포섭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어서 저항권의 본질과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II), 이어서 과연 5.18 운동이 저항권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즉 학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저항권론이 제시한 저항권행사의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III), 5.18운동이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모순적인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을 저항권의 본질에 비추어 분석한다(IV).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5·18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민중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2008년 1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는 글을 게재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커다란 시각에서 본다면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란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살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의 부인은 독일에서 발생했던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 Denial)이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200만명의 민간인이 나치와 그 협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 부인자들은 아우슈비츠나 여타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가스실이나 소각로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홀로코스트 부인 등의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독일은 나치체제가 저지른 제노사이드를 찬양·부인·경시하거나 나치체제의 찬양 등의 행위를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로 규정(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제4항)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 제130조와 같이 대중선동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형법상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통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식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27일 지만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나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법률안은 무엇인지를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개념 및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Ⅱ), 역사적 사실 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 부인의 형법적 규제반대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한다(Ⅲ).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신설을 제안한다(Ⅳ).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에 관한 토론”

헌행법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 폄훼발언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의율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라는 특별한 죄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고의적, 악의적 폄훼발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누구나 싫어하는 국가공권력행사이다. 특히 ‘말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받는 것은 특히 꺼려하는 부분이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향유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여러 기본권 중 특별한 기본권이다. 인간이 과거의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 개선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유럽 역사를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유대교에 대하여 기독교는 이단이었고, 500년 전 구교에 대하여 신교는 이단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판단이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장 듣기 싫은 이야기이더라도 그것을 듣겠다는 열린 마음을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이 아니라 ‘말’로 하는 비판, 비난, 힐난 등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듣기 싫고 역겹더라도, 민사책임, 공법적 책임을 넘어서 형사책임을 부과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세상은 늘 변전한다. 여당야당이 항상 바뀌듯이,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도입될 경우, 세상이 바뀌어 보수정권이 들어선 뒤, 진보적 사상이 하는 말에 대하여 ‘처벌’하려고 할 때,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조항은 좋은 핑계거리가 될 것이다. 형사처벌의 싸움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데, 결코 바람직한 미래로 보기 어렵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마련될 경우 자칫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파적 견해가 단죄되는 폐해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신설을 통해 우파적 견해를 처벌하는 폐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과 관련해서 형사처벌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민사제도의 개선이나, 공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세 치의 혀로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영령과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사죄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에 큰 죄를 범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더 이상 악의적 역사 왜곡과 민심 교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조속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

토론문11 | 5·18망언자 퇴출 및 처벌방안에 대한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의 입장

정 명 훈 |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공동대표

우리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는 촛불혁명에 앞장 섰고, 수백명 촛불시민들의 글과 사진 등을 모아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출판한 후, 촛불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 완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행된 지만원과 자한당 의원들의 반민족, 반민주, 반헌법,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불법적이고 반역적이며 범죄적인 망언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내란 동조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적 최종 판결 부정에 의한 민주질서 교란죄, 반민주적 반란군의 학살에 의한 엄청난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 및 명예훼손죄 등)

우리는 촛불집회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자 퇴출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1. 자한당이 지만원을 고발하도록 압박한다.
2.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제명 및 출당조치 하도록 압박한다.
3. 여야 4당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도록 압박한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구속 수사 처벌하도록 압박한다.
4.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의원들을 묵인했던 김병준을 사퇴하도록 압박한다.
5.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의원들을 다양성의 이름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후 그 범죄자들을 국회에서 처벌하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손해의원원 문제를 내세워 물타기 하면서 그 징계를 무산 시키는 나경원을 사퇴하도록 압박한다. 친일, 친박 부역 경력에 부동산 등에 대한 의혹투성이 나경원에 대해 고발을 추진한다.
6. 자한당은 온갖 부정과 국정농단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촛불혁명이후 해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반성은 커녕 촛불혁명 이후 적반하장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가로 막는 일만 하다가, 급기야 김영삼대통령의 민주적 결정과 역사적 업적을 부정하고,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예를 자처하며 5·18민주화운동을 훼손, 폄훼하는 사단을 벌인 수구적 자한당 해체를 위해 범국민적 여론전을 전개한다.
7.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을 "북한군 게릴라, 어린 아기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북한군의 게릴라" 등으로 음해한 천인공노할 지만원을 정상인으로 볼 수 없다. 지만원을 강제 입원 시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언행을 하면서도 박사임을 내세워 자신이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인양 부정한 세

력이나 심신미약인 사람들을 호도하는 지만원을 고발조치 해서 구속하고 처벌하도록 한다.

8.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공격은 광주나 호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나라와 민족, 세계의 양심에 대한 천인공로할 공격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 전국의 시민과 시민 단체, 지방자치단체, 극우 자한당의원들 상당수를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촛불정부 등 범민주진영이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발전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3.1혁명 100주년. 2. 20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공동대표: 정영훈, 조형식, 안승문, 정호천, 허인회 외)

MEMO



5·18 망언 의원 퇴출, 한국당 규탄 시국회의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0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자료순서〉

1. 5·18 망언 관련 상황
2. 지역상황 보고
3. 사업목표 및 대응방향
4. 시국선언문

1. 5·18 망언 관련 상황

1) 국회 윤리위, 상정 불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여야 3당 간사가 5·18 망언 의원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함. 다만 18일 윤리위에 넘겨진 안건을 오는 3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해 이번에도 유명 무실한 윤리위가 될 가능성을 남겼음.
-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간사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오전 간사회의를 개최해서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여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차명투기 의혹 등에 대해 안전에서 제외하자고 하고 있음. 때문에 28일 간사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임
-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갈 길이 멀. 징계 절차는 ▷안전 상정 ▷자문위 회부 ▷징계소위 논의 ▷윤리위 통과 ▷본회의 의결로 이뤄짐.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윤리위는 20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징계를 하지 못했음

2) 5·18 망언, 한국당식 솜방망이 요식 행위 ‘징계’

-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국회의원 징계 유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의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14일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윤리위 심사 결과를 발표함. 이에 대해 한국당은 급한 불을 껐다는 입장임. 유일하게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마저도 의원총회 의결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조차 불투명함.
-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함. 당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출마자는 선거기간 동안 윤리위 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종명 의원의 제명도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님.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최종 제명이 된다 해도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징계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검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다”고 했음. 한편 그는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인지도가 올랐다”고도 했음.
- 김진태 의원은 “휴가분해했으니까 전당대회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음.

3) 자유한국당, 청와대 5·18 진상조사위원회 재추천 요구 거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5·18 진상조사와 관련한 국회 추천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판하며 기존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재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추천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함.

4) 수구세력의 무기, 혐오 정치

- 국가권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학살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왜곡을 지속 해왔음.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방식이었음. 일본의 극우정치인과 같은 맥락임.
- 전형적인 ‘혐오정치’, ‘노이즈 마케팅’ 이지만 특정 세력을 비하하고 폄하하면서 그 반대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임.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과도 있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음.
- 여기에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나온 황교안은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세훈은 남북 평화의 흐름을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5) 망언 3인에 대해 4당 징계안 제출, 5·18 왜곡 금지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욕 논란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다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의원의 제명 징계를 위해선 3분의2 동의를 있어야 함. 현재 국회의원이 298명이고 한국당 의석이 113석인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이탈자가 15명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임.
- 김무성, 장제원 의원 등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명 징계 처리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민주당은 전날(13일) 한국당 및 일부 보수 세력의 5·18 망언 규탄 및 역사왜곡 날조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5·18 왜곡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음.

6) 5·18 망언, 한국당 지지율 추락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 후폭풍이 알파만파 번지면서 당 지지도도 폭락하는 모양새임.
- 한국당은 최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당 지지도를 한때 30%까지 끌어올렸으나, 5·18 망언으로 1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25.7%를 기록했음. 한국당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양상을 보였음.
-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비해 60대 이상과 20대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과 세대에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5·18 후폭풍 여파로 하락세를 맞았음.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25.2% 나타남. 한주에 3.7% 빠진 수치임.
-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56.6%로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33% 보다 높게 나타남.

7) 2.27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현 국면 이어질 듯

- 한국당의 요식행위식 징계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한국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 역사왜곡에 대한 형식적 사과와 또 다른 망언을 지속하면서 정국은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5·18 망언과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스스로 친박인사와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이종명 비례대표 2번. 육군 대령 출신
- 김순례 비례대표, 2016년 세월호 참사를 빚대 당시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됐는가라고 유가족들을 가리켜 ‘시체장사’ , ‘거지근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음

2. 지역 상황 보고

<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

1. 명칭

“자유한국당 3인 망언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 (줄임: 5·18역사 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2. 목표

- 지만원 구속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 국회퇴출
- 자유한국당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
- 재발방지 대책마련(역사왜곡금지법 및, 제도)

3. 주요역할(사업)

-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
- 서명운동, 집회 등 국민운동
- 역사왜곡금지법 제정 등 재발방지 법, 제도마련 활동
- 토론회 등 진실규명과 왜곡방지를 위한 전국화 위한 활동

4. 조직구성

- 구성 : 광주지역 민, 관, 정,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을 총 망라함.
- 대표자회의 : 참가단체(기관) 대표자 전체회의
- 상임공동대표단 : 영역별 상징적 대표자로 구성
 - 민(시민사회, 여성, 학계), 오월, 관, 종단, 정치권(?) 각 1인
-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 집행책임자
- 공동집행위원장단 : 오월, 시민사회, 관, 정 등 15인 내외
 - : 간사단위로 재단, 진보연대, 시가 담당
- 실무기구 : 필요한 기획 및 사무담당

4. 재정

- 참가단체 분담금, 시민모금, 역사왜곡예산 등

<경기>

2월 14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 5·18 기자회견 개최

2월 22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 앞 규탄 집회 / 성남

<강원-춘천지역>

2월 18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및 김진태 퇴진 요구

- 강원대 민주동문화, 강원 5·18 동지회,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대구-경북지역>

2월 13일 <공동성명> 5·18 정신 부정,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 58개 단체

2월 18일 오후 1시. 대구엑스코앞 <5·18망언 국회의원 3인 제명, 자유한국당 해체 기자회견> - 66개 단체

- 자유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가 18일(월) 2시부터 대구엑스코에서 열리는 관계로 장소를 대구엑스코로 정함

<경남>

2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5·18망언규탄 기자회견

<부산 적폐청산운동본부>

2월 13일 자유한국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

2월 21일 14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 앞 규탄행동 / 해운대 백석호 예정

3. 사업목표 및 대응방향

1) 사업 목표

- 지만원 구속 및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 징계
- 망언 의원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해체)
- 재발방지 대책마련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제도 개선)
- 5·18 민주화운동 발포 및 헬기사격 명령자, 민간인학살암매장 등 진상규명

2) 대응 방향

- 5·18 역사왜곡 사실을 드러내며 시국선언, 온/오프라인상의 국민행동, 촛불집회 등 다양한 행동 전개
- 광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대응 태세 구축, 대응 촉구
- 요식행위 징계에 대한 규탄투쟁 전개
- 5·18 북한군 개입설 진상조사를 특별법으로 수용한 민주당에 성찰을 촉구

4. 5.18 시국회의 성명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명백한 진실들이,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버젓이 부정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북한군 특수부대 남파설’ 이,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을 영웅으로 칭하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 감히 행해지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입에서 ‘폭동’ 이니 ‘괴물’ 이니 하는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촛불 항쟁의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 망언들에 대해, 국회에 110석을 넘게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의 태도이다. 이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 망언들에 대해 ‘해석의 다양성’ 을 운운하더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부랴부랴 사과를 하느니, 해당자들을 징계하느니 하며 부산을 떨고 있다. 또한 그들의 ‘징계’ 는 요식행위요 ‘징계쇼’ 였음이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징계이후 망언 3인 국회의원 발언에서다. 그들은 징계 이후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다” 고 하는가 하면, “흘가분해졌” 다고 하기도 했다. 어느 구석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5·18이 폭동이며, 유공자가 괴물이라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두환 시대를 살고 있는 퇴행적 인사들이 ‘해석의 다양성’ 을 누리며, 공천을 받아 국민의 대표로 행세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러한 왜곡과 망언들은 이 땅 민주주의의 근원, 이 나라의 국체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 땅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시국회의를 개최하며,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해당 토론회의 주최자인 김진태, 5·18을 폭동으로 모독한 이종명, 5·18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한 김순례 의원의 의원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

이 촛불 항쟁의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독재 시절을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둘째, 망언 3인이 소속정당 자유한국당은 3인을 즉각 제명하고, 이들의 의원직 박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의 망언을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간주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왜곡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확인 등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5·18에 대한 모독은 이 땅 민주주의와 국체에 대한 도전이므로, 독일의 ‘반나치법’ 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오월영령,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작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촛불 항쟁으로 납작 엎드려 있던 적폐정당이, 마치 촛불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적폐청산 작업 역시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하고 있는 이 때, 5·18마저 부정하는 시대착오와 과거로의 퇴행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9일

시국회의 참가단체

부록2) 5·18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모음

“지만원을 국회에 불러들인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2019년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가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하여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한 극우논객 지만원을 초청해 장장 3시간 동안 마이크를 쥐여주었다.

○ 지만원은 공청회에서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헌법 전문에 5·18을 집어넣어 5·18 공화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남북 적화통일이 되는 것” 등의 비상식적 망언을 쏟아냈다.

○ 지만원은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줄기차게 주장한 행위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자이며, 이러한 범죄자의 주장에 조직적으로 동조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 또한 5·18을 폄훼해 반사 이익을 노리는 극악 무도한 정치 무리들의 마지막 발악이며 자유한국당 일부가 명석을 깔아 준 것으로, 일부 정신 나간 정치인들의 망발이다.

○ 심지어 김진태 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전 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종명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냐”라면서 “사실에 기초해서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란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러한 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극우 보수세력의 공청회를 후원하는 것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자유한국당의 퇴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5·18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는 지만원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들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더불어 광주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 항의방문 등을 시작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실천적 정치활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2019. 2. 1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5·18 공청회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일 극우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자행한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중항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5·18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

이는 거룩한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만행이다.

또한, 신군부에서 자행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 이념분쟁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날조한 지만원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공청회를 방치한 자유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공당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

이제 구시대의 낡은 정치행태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청산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정치권과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9. 2. 1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2월 8일 5·18공청회 망언은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 5·18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및 광주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제명 및 퇴출운동을 강력히 펼쳐갈 것이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은 5·18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며 5·18 유가족과 피해자,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5·18 유가족과 피해자, 광주시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국민의 힘을 모아 대응해나갈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바로 잡는 것은 5·18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국회의원(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을 제명하고 즉각 사과하라. 이와 함께 우리는 해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전국민적인 퇴출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 국회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강력히 징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 정부는 지만원을 즉각 구속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2019. 2. 11.

5·18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5·18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및 광주시민사회단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은 5·18영령과 국민앞에 사죄하라!

지난 8일 민의의 전당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지만원씨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지만원씨를 국회로 불러들여 벌인 공청회에서 지씨는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였다”고 주장하며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자신의 평소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지씨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 났을 뿐 아니라 이를 믿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다. 김진태 의원은 모든 것을 기획했고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 발언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내 뱉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던 시기 민간인 학살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일당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자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를 위해 일어났고 1980년 5월18일 광주시민들은 열흘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땅에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는 동아시아 전 지역에 민주화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5·18진상 규명을 통해 이미 김영삼정부 당시 신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지난 2011년 5월 25일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사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당시에도 지만원씨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조사결과 허무맹랑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음에도 계속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고 국가 법질서를 유린하며 노골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짜뉴스에나 떠도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믿고 이를 부추기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영령들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과거 어느때 보다 한반도에 봄기운이 돌고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변영

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때 이번 공청회 사태는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 가슴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김진태 의원의 비뚤어진 눈과 더러운 입은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이나 갈수록 그 광기를 더해 이제 같은 국민임이 낮부끄러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또 어떤가. 당내 여러 의견중 하나라면 이번 망언이 자유한국당의 팔다리 중 일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천코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련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며 관련 국회의원들은 5·18영령과 국민앞에 백배 사죄하여 과오를 씻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저지른 반인륜적, 반역사적 행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5월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 설 것을 밝힌다.

2019. 2. 1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남철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의원들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영령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

지난 2월 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반하는 대테러가 일어났다.

민의를 전당인 국회 한복판에서 자칭 국민의 대변자라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을 쏟아내며 5·18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오월 영령들을 욕보이며,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중북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 지난 38년 동안 숭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오월의 진실이 또다시 ‘폭동’ ‘괴물’ ‘중북좌파’라는 단어로 매도당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수단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작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 광주시민 그리고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 바쳐 희생한 영령들과 민주세력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국가도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민주주의거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두 번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민주주의 역사가 유린되지 않도록 150만 광주시민이 결집할 것이며, 범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세 치의 혀로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영령과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에 큰 죄를 범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

하나,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더 이상 악의적 역사 왜곡과 민심 교란 해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만약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모두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2. 12.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탄핵폐족 자유한국당'이 법도, 윤리도 거부하며 이 나라 정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 2016년의 촛불민심에 의해 진작 없어졌어야 할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패악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의원)>를 출범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들은 즉각 국회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광주의 민주영령,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유족들을 모독했다.

또한, 당 소속 의원들의 명백한 망언을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 운운하며 다시 한번 5·18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광주시민은 물론이요 국민 앞에 엎드려 잘못을 빌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의 치욕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모체 정당이요, 사실상 5·18 역사왜곡의 기획집단으로서 국가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9년 2월 12일

5·18역사왜곡대책특위대변인 장정숙

5·18 정신 부정,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정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폐’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시대착오’의 극단이자 망발이다. 5·18을 넘어 6월항쟁, 촛불항쟁까지 이뤄낸 이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련할 뿐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이러한 망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망언들조차 하나의 ‘해석’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광주민주항쟁을 ‘폭동’으로 보며 △자유한국당에 서는 그러한 독재의 논리가 ‘다양한 해석’ 중 하나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촛불항쟁으로 바뀐 이 시대에, 이미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으로 증명되고 확정된 5·18에 대해 아직도 “‘폭동’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한심한 정당이 국회에 남아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촛불항쟁 이후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꿀 것이 아니라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해산했어야 할 정당이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시대착오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유족과 광주,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을 모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하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당의 해산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때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민주노동당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58개 단체, 가나다 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최근에 일어난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의 망언과 망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이다. 이들은 각종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로 대한민국의 분열을 책동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그 유공자 및 가족과 국민에게 분노와 상처를 주었다.

1980년 5월18일 광주는 전두환과 그의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민간인인 시민과 학생 부녀자들이 살해당하고, 폭행당했다. 정부공식 집계에서도 그 피해자가 7000명이 넘는다. 아직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때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실상과 진실을 밝히려고 분신, 투신을 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를 증언하고 요구하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투옥 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왜곡, 폄훼하고 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은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반민주적 폭거를 한 것이고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5·18 민주항쟁을 부인한 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성남의 김순례는 세월호 참사시 시체 팔이 운운하는 막말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가족 및 전 국민에게 공분을 자아나게 한 자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광주 시민들을 살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주범이 군사쿠데타 세력이었음을 다시 국민 앞에 고백 사죄하고 해당 3인 의원을 제명하기 바란다. 국민들에게 분열과 피해를 주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망언자 3인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세월호 망언과 518 망언 김순례는 사퇴하라
518 망언과 폭거 김진태는 사퇴하라
518 망언과 폭거 이종명은 사퇴하라
국론분열 유언비어 유포자 지만원을 구속하라
518 망언 진원지 자유한국당은 망언자 3인을 제명하라
국회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망동을 일삼은 3인을 즉각 제명하라

2019.2.13.

사단법인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송광영천세용열사 기념사업회/김종태열사 추모사업회/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귀농사모/성남시민행동/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한희철열사 추모사업회/신장호열사 추모사업회/성남평화연대/성남여성의전화/오늘도 행복한 청소년/성남 민주시민학교/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성남용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정치하는 농부들/성남KYC/세월호 성남 시민대책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망동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와 그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망동 망언으로 이 모두를 모독했다.

김진태 의원의 무지몽매한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의원직을 수행하는 내내 이어져 왔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참고 또 참으며 포용해 왔다. 그러나 급기야 금도를 넘어 국회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재외동포들은 김진태 의원과 함께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규탄한다.

더불어서 온갖 거짓 요설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왜곡하고 반복해서 주장함으로써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 대고 있는 지만원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에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과 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모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대양 6대주에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추호의 소홀함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으로선 대변하고 권익을보호해야 할 국민들인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이며 유공자들에게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미명 아래 폭동,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낸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 처리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고자 국민에 의해 부여된 면책특권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국민무시당 국회모독당으로 전락시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출당조치하여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복원하라

하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가족 및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며 허구임을 증명하는 갖가지 사례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고 광주민주항쟁 관계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가까스로 희석되어 가고 있는 지역대립을 또 다시 악화시키고 있는 지만원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 구속수사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위에 적시된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에도 응하지 말 것이며, 차제에 건전한 국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라.

2019년 2월 13일

재외동포 일동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와 폄훼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2월 8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등은 “80년 광주 폭동이 10,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이종명),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지만원) 등등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통해 또 다시 5·18민주화운동의 대의를 날조·폄훼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의한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국민행동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5·18민주화운동을 날조·폄훼하는 이와 같은 망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5·18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날조·폄훼 발언을 ‘표현의 자유’, ‘공론의 장의 대화’라는 이름 아래 언제까지 묵과해야 하는가? 금번 5·18민주화운동의 날조·폄훼에 앞장선 지만원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형사 재판을 통해 사법적 제재를 받은 자이다. 이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망언을 조장·방조한 것이야 말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또 다른 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회와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폄훼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인’에 대해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독일형법과 유사하게 강력한 형사처벌로 엄단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왜곡 처벌법안’(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올바른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전개되던 당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지성인다운 태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이 전격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 당시 “민주시민이여! 민주화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일어섭시다”라고 외쳤던 우리들은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번 일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즉각 제소하고, 제명하라.
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자유한국당은 5·18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위원을 재추천하여 진정한 진상규명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라.
4.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왜곡 처벌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이념’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민주개혁’을 실천하라.

2019년 2월 13일

전남대학교 제39대 교수회/제17대 평의원회

국회는 5·18 역사 왜곡! 민주주의 부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즉각 제명하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제명에 동참하라!

지난 2월 8일(금) 진행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는 시종일관 5·18 민중항쟁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별질됐다”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가족이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민중항쟁 희생자 유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보내 공청회를 응원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차례나 가짜뉴스로 판명된 지만원씨의 주장을 근거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현재의 헌정질서의 기틀은 광주 시민들의 목숨과 피로 물든 5·18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 ‘광주 폭동’ ‘괴물집단’ 등 있을 수 없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민주화 30년의 역사 부정이자, 헌정질서를 거부한 도발 행위이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일제 강점기의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당시 독립운동가가 ‘역청산’당한 참담한 현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5·18 역사왜곡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회는 김진표, 이종명, 김순례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죄함으로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국회 제명에 적극 동참하여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만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망언 3인방과 함께 퇴출 명단에 자유한국당 다섯 글자를 올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

2019년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5·18 역사학회가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석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모독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 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회관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도 ‘북한군 개입’, ‘광주 폭동’,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 내며 적극 동조했다는 점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김진태 의원 등의 이 같은 인식과 발언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만들었던 자신들의 역사는 물론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1997년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은 평화와 민주 그리고 공존을 향한 당시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한 영향 등이 인정 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사실이다.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국회의원이 앞장 이를 지지하는 퇴행적 사건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은 중단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독을 일삼는 지만원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김진태 의원 등을 국회에서 제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국회의위직을 사퇴하라 !!!

하나.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한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의원을 제명하라 !!!

하나,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는 퇴행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2019년 2월 15일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서울특별시의회회장 신원철, 부산광역시의회회장 박인영
인천광역시의회회장 이용범, 광주광역시의회회장 김동찬
대전광역시의회회장 김종천, 울산광역시의회회장 황세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회장 서금택, 강원도의회회장 한금석
충청북도의회회장 장선배, 충청남도의회회장 유병국
전라북도의회회장 송성환, 전라남도의회회장 이용재
경상남도의회회장 김지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장 김태석

5·18 왜곡·편향을 강력 규탄하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편향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편향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5·18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적·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입니다. 이는 4·19 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평화와 인권의 역사이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입니다.

이에 우리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인 5·18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1.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강화한다.
2. 전국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3.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2019년 2월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18 망언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5·18진상규명법 제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희생실태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

거듭되는 사법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과거사를 왜곡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지만원에게 망발의 명석을 깔아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북한군 개입’, ‘5·18유공자는 집단괴물’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벌어졌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집권전략에 맞서 분연히 싸웠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5·18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불행했던 과거사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5·18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어떠한 세력의 왜곡 행위에 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 해당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국론분열,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을 구속하라!

2019. 2. 20.

제주4·3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

강원에서도 "김진태 의원직 사퇴 촉구"

“강원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김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강원 춘천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 망언' 논란과 관련해 강원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집회를 갖고 강력히 규탄했다.

강원지역 5·18민주화운동 동지회는 13일 김진태 국회의원 춘천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가 여러차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 지만원을 국회에 불러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는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5·18 정신의 왜곡과 폄해를 목적으로 한 공청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980년 5월 전두환의 군사반란은 정당한 것이고 이에 저항한 국민들은 폭도이며 유공자가 아니다'는 논리였다"며 "이는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역대 정부에서 지켜온 5·18민주화운동 기본법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지회는 또한 1980년 5월 당시 강원도 춘천에서도 진행된 전두환 정권의 군사반란을 막기 위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의 망언에 분개했다.

이들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을 막기 위해 나섰던 100여명의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춘천 보안대 지하실에 끌려가 두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거나 군부대에 끌려갔고 심지어 공직에 있는 부모들은 해직을 당하고 사업을 하는 부모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국회의원이 그동안 여러 사건사고에서 발언했던 문제점도 지적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동지회는 "세월호 사건 때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것'이라 하며 세월호 인양을 반대해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촛불시위 때는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해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부록3) 5·18 정신 신설 헌법 전문 개정안 비교

(참고 자료) 국민개헌안 대조표

1. 현행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헌법 전문 대통령 발의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헌법전문 국민개정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의 주권자국민은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줄기차게 불의에 항거한 국민들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당면한 민주개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가와 사회 및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주권자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록4) 5·18 망언 의원 퇴출을 위한 국민소환제 재서명운동 안내

<국민소환제 실시하여 5·18 부정 망언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한당의원을 퇴출하자>

"그런 수구반동적인 집단 속에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들 수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이런 말을 했을까?

5·18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5·18민주유공자가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전두환씨가 영웅이라고?

'김영삼정부 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1995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세력을 내란죄로 단죄했다.'

5·18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다. 광주시민이 저항권을 사용하여 민주헌정을 죽음으로 지켜낸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법원에서 판결 났다.

정치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망발 3인 의원을 제명하자고 143명이나 모여 긴급토론회를 벌렸다. 하지만 제명 정족수 3분의 2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를 잘 아는 자한당은 당헌 당규, 법치주의 운운하며, 김진태, 김순례의원의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었다.

하지만 24년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실을 왜곡하며, 법치주의를 먼저 어긴 것은 3인의 망언 자한당국회의원이다.

현행 국회법제도 아래에서 망언 3인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박근혜씨 탄핵 때처럼 또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소환제는 망언 국회의원처럼 불법, 부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거 없이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는 제도로, 임기 전 파면제도라고 한다. 현재 영국, 스위스, 일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리히텐슈타인과 미국의 15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민소환제 입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탄지를 걸어도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망언 자한당위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같은 3분의 2를 모아 제명하자는 안보다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야 3당 국회의원에게 즉각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소환제 제정으로 5·18망언자 3인을 국회에서 퇴출시키자."

**'국민 5명 중 3명은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
영남권에서도 절반 이상 찬성!'**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서는 "5·18부정망언 자한당의원 3인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소환제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서명 사이트 : moveon.kr

참고) (국민 개헌안)제7조의2 ①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과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소환하거나 임명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파면할 수 있다.

부록5)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활동 소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소개

1. 단체의 역사와 개요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20여개 단체가 모여 지난 2017년 3월 17일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등 3당의 졸속개헌, 정략개헌반대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참여개헌 촉구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 온 시민사회의 개헌 운동단체임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참가단위

개혁입법네트워크, 국민주권시대,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NGO연구자실천연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주권민주주의포럼, 만민공회,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밝은 마을, 광주시민주권행동,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무궁화클럽, (사)함께 배움, (사)생물다양성한국협회, 통일염원시민회의, 한국주민운동교육원, 강북구주민참여개헌네트워크,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노원지부, 아산시민연대, 안산시민정치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2. 제반사업과 활동

- 3당야합 개헌추진 저지 긴급회의(2017/3/17): 주요 정당, 후보에게 국민이 빠진 졸속개헌안철회와 개헌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결정, 성명서발표
- 졸속개헌반대 시민캠페인(4/1,4/15,4/29): 광화문 광장
- 제정당 및 후보들에 대한 국민참여개헌 공개질의서 발송 및 기자회견(4/6): 국회/국회개헌특위로부터 5당 대선들의 개헌 공약을 도표로 정리해서 받음
- 국민참여개헌촉구 기자회견(6/24): 광화문광장
- 국민참여개헌 1차 범시민토론회 개최(7/21)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준) 결성 기자회견 참가(8/29)
- 국민참여개헌 2차 범시민토론회 개최(9/8)
- 국민소환제서명운동 및 대국회 규탄 광화문 기자회견(9/23)
- 국민소환제 거리서명 및 캠페인 지속(10/21, 10/28): 광문광장
- 성북구 위탁 주민개헌교육 10강(10/10~11/7): 55명 등록, 30여명 참가
- 국민소환제 개헌 100만 서명운동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참여연대 직접민주제개헌 공동주최(11/1)

- 정치개혁 및 개헌촉구 시민한마당 참가(11/11)
- 행정안전부 주최 국민참여제도화 관련 토론회 참가(11/14)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주최 4차 개헌토론회(11/21.):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 전철협 주관 토지공개념개헌 토론회(12/26)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노원지부 개헌캠페인(2018/1/16)
- 강북구주민참여개헌네트워크 주최 강북주민 개헌교육(1/26)
- 국민개헌 1000인 원탁회의추진및 사전 지역 토론회
(강북,아산,광진구,인천,부천등)
- <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헌법> 출판(2/3)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박주민의원실 주관 직접민주제개헌 토론회(2/6)
- <10대 국민개헌안 선정투표>시작(2월 초)
<https://goo.gl/forms/HAIU0vvGSiczdNJr2>
- 민주평화당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 토론회(2/27)
- 6월개헌과 직접민주제 실현촉구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의 기자회견(2/28)
- 10대개헌안 선정 국민개헌원탁회의(3/3): 천도교대교당 강당 350여명 참가
- 여야 각 정당 정부의 국민개헌자문특위의 참여 및 10개헌안 전달식
- 국민개헌1000인 원탁회의 선정 10대 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3/14)
- 대자유한국당 비판 성명(3/18): "개헌안, 6월국회 여야합의 발의는 꿈수다"
- 대국회,대정부 성명서발표(3/18): 대청와대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개헌 촉구
- 청와대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3/22): 국민발안제등 직접민주제개헌촉구
- 대통령 개헌발의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3/26): 헌법 국민발안제 반영하라!
- 대통령개헌안 발의이후 개헌운동의 발향과 전략 워크숍(3/26)
- 안산시민정치포럼 직접민주제실현 6월개헌촉구 기자회견(4/2)
-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한 논평(4/3)
- 국민개헌넷 주최 국민개헌촉구 행사 참가(4/7)
- 국민개헌원탁회의 주최 12대개헌 쟁점공론조사 돌입(4/18)
- 직접민주제 실현 풀뿌리헌법교실 개강(4/19~5/10): 4회 강좌
- 6.10항쟁기념 제 1회 헌법역사기행(6/10): 40여명 참가, 해설 조정찬선생
- 제 2회 헌법역사기행(6/30): 25명 참가, 해설 조정찬선생
- 제 70주년 제헌절 기념 국민개헌촉구 경향신문 전면광고 및 개헌촉구
기자회견: 경향신문(7/17), 광화문광장
- 제 3, 4 회 헌법역사기행(7/28,9/1)): 22명 참가, 해설 연성수 공동대표
- 국민개헌 쟁점 비교대조표 출간(현행헌법, 대통령발의안, 국민개헌안 대조)
3, 4 회 헌법역사기행(7/28,9/1)): 22명 참가, 해설 연성수 공동대표

- 인천 미추홀구 인권교육 5회 강좌(9/3~9/17): 40여명 참가,
강사(연성수 공동대표, 백선기 운영위원장)
- 제주여성농민회 헌법강좌(10/3): 연성수 공동대표
- 제1기 안산민주시민아카데미 헌법역사기행(10/9): 23명 참가,
- 대전 둔원고등학교 헌법역사기행(10/27): 21명 참가
- 전교조서울지부,서울참교육동지회와 공동주최(11/3): 제 7차 헌법역사기행,
헌정사교육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 전교조평창지회 공동주최(11/4):제8차 헌법기행, 헌정사교육,원탁회의(27명)
- 제9차 헌법역사기행(12/1): 제 10차 헌법역사기행(2019,1,5)
- 사법개혁토론회와 제2차 작은 원탁회의및 2018송년회(12/15,문화공간 온)
- 주민직접참정제 확대방안토론회 및 제 3차 원탁회의(2019,1,19)
- 전국 553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5.18시국회의를 주최 5.18민주화운동
평화 3인 국회의원 퇴출 및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해체)민주헌정수호-5.18부정망언세력 퇴출 성명서 발표
(2019,2.19)
- 제11차 헌법역사기행 <삼알독립선언현장에서 건국강령, 제헌헌법까지>
(2019,2,23)
- 민주헌정수호-5.18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주관(설훈, 최경환의원,
30여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공동 주최) (2019,2,25)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온라인주소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irectlypower>

국민개헌 쟁점 온라인 투표 사이트 <https://www.moveon.kr>